

문 : 훈장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문 : 건강상태는 어떠한가요.

답 :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문서감정과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언제, 어디서인가요.

답 : 1) 1989. 5. 하순경 서울시청앞 소재 진다방에서 사설감정 사무실을 경영하는 이인환이라는 사람을 만나 동인에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인 김형영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하며 이인환에게 현금 200만원을 편지봉투에 넣어주었는데, 일주일 후 이인환을 만나서 전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2) 1989. 8. 19. 대전에서 미리 파악하고 있던 김형영 실장의 처 신귀분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번호로 금 2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당시 송금한 사실을 알려 주어 김형영이 그 돈을 즉시 인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3) 1990. 4. 일자불상경 서울시청앞 소재 프라자호텔 중식당에서 김형영을 만나 식사를 하고 집으로 가기 전에 현금 100만원과 수표 100만원을 섞어서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현금과 수표의 구성내용은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 그렇게 돈을 교부한 이유는 조병길 명의로 각서 및 인증촉탁서의 감정과 관련하여 감정을 하게 되면 잘 부탁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문 : 금품을 김형영에게 교부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시오.

답 : 제가 우선 임봉규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임봉규는 인삼중개업을 해오는 사람으로 제가 인삼중개업을 하던 당시 은연중에 경쟁의식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던 것이 제가 그 업체를 떠나서 그런 감정이 지속되었다가, 저와 절친한 조남근의 인삼밭에서 인삼을 몰래 캐어간 일로 조남근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87. 4. 27 경찰서에 입건되어 결국 구속이 되었는데, 저는 사실 무관한데도 임봉규가 조남근이 저의 수하에 있으니 제가 그를 사주하여 자신이 구속된 것으로 꼭해하고, 저에게 합의를 부탁하여 저와 배동희가 나서서 결국 합의가 되어 임봉규는 그해

7. 2. 경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는데, 고마움을 모르고 저를 만나기만 하면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리 사이가 좋지 않았던 중 금기야 1988. 3. 경에 조병길과 함께 저를 진정하였는데 그 내용으로 임봉규는 자신이 구속 중에 제가 임봉규와 임춘성을 협박하여 돈 1억 8천만 원을 갈취하였고, 조병길은 자신의 회사를 제가 빼앗았다는 내용인데, 저는 결국 그해 5. 11. 자로 서울지검 수사과에서 공갈의 점이 인정된다며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병길이 제가 죄영속으로부터 인수한 신영건설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있던 조병길이 그 이전에 제가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킨 것에 양심을 품고 있다가 진정도 같이 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나, 제가 구속이 되자 회사를 말아 먹을려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무효의 소를 제기하고 대표이사 직무정지처분소송을 내는 등 불순한 움직임을 보였고, 결국 조병길이 저에게 해준 각서의 진정성립(서명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 각서내용은 "대표이사로 조병길이 되어 있지만 공사계약이나 여러가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행사에 회장인 저와 미리 합의하고 저의 승락을 얻어서 집행하기로 한다. 주식 35퍼센트는 조병길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으로 결국 조병길이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자라는 내용이므로, 그것이 진정성립되었기 때문에 그런 회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공갈사건 재판에 만 전념하였는데 1989. 2. 28. 보석으로 석방되어 나와서 며칠후에 이송운이라는 사람의 각서에 대한 감정서가 있는데 그 내용의 조병길 서명부분이 모방체니 전사체니 하면서 마치 위조된 듯한 감정을 하여 계류 중인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무효의 소에 제출 되었다고 하여 입수하여 확인하여 보니 너무 터무니없어 이인환의 감정사무실을 찾아서 자문을 구하기 시작하였고, 그후 이의주의 감정서도 이송운의 감정서와 동일한 취지로 제출되어 엉뚱한 방향으로 재판이 끌려갈 것 같아 무슨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고민하던 중, 이인환에게 이의주를 찾아가 동일한 각서에 대하여 조병길의 필적이라는 전 감정서와 상반되는 내용의 감정서를 부탁하라고 하였더니 이인환이 이의주에게 찾아갔으나 이의주가 그건 곤란하다고 거절하여 화도

나고 걱정을 하였더니 이인환이 걱정하지마라 다수가 있다고 하여 문서를 틀림없이 감정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느냐고 문의하니 우리나라 문서감정업체에서 최고권위자라 할 수 있는 김형영을 잘 아는데, 한번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여 그러면 어차피 각서 부분에 대한 감정이 문제가 되면 국과수에 감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 잘 감정을 하여주고 또 저와 한번 만나 상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탁하면서 200만원을 김형영에게 전달하라고 현금으로 주었더니 이인환이 그것을 김형영실장에게 전달하였고, 곧 만나기로 약속이 되었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1989. 5. 말경 이인환이 대전 저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저녁 7시 까지 프라자호텔 로비라운지에서 만나자고 하여 김형영을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이의주의 허위감정서를 보여 주며 다시 한번 감정이 옳으나며 김형영이 한참 살펴 후 감정이 잘못되었다. 엉터리 같은 놈이 어디 있느냐, 다음에 문제가 되더라도 아무 걱정하지 마라, 자신이 잘 해결토록 하여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옆에 일식집 송원에 가서 저녁을 대접하고 순순히 헤어졌습니다. 그런 연후 약 두달후인 1989. 8. 15. 프라자에서 김형영을 만나서 이송운의 엉터리감정서도 보여주며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소연하고, 혹시 이 각서사건이 문제가 되면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하니, 김형영이 원래 이송운은 엉터리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 그곳 호텔 중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용돈 좀 보내드릴 테니 온라인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하니 순순히 자기 처 신귀분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그 며칠 뒤인 같은 달 19. 대전에서 저희 사무실 여직원을 시켜 국민은행 중부지점에서 금 200만원을 그 계좌로 송금토록 하고 그 사실을 김형영실장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연후에 조병길도 처음에는 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되었다가 나중에 위증을 하여 제가 고소하여 그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건에서 각서건이 감정이 되고 그 결과가 저에게 아주 유리하게 되어 조병길은 유죄로 인정,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결의 무효의 소도 제가 승소하는 등의 일련의 일이 있고 난 후 프라자호텔 중식당에서 김형영을 다시 만나 고마움의 뜻을 표시하면서 금

200만원을 현금과 수표를 섞어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송운이나 이의주 같은 사람이 조병길의 부탁을 받고 엉터리 감정을 하여 주지 않았다면 제가 문서감정판례에 관심을 가지고 김형영실장을 만나야 하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조병길이 먼저 저희 회사를 빼앗아가려고 회책하여 제가 그에 대응한다는 것이 결국 이런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고, 김형영실장에게 큰 피해를 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문 : 당시 김형영실장이 피의자가 임봉규 등을 상대로 1억 8천만원을 갈취하였다는 사건의 1심재판시에도 자기앞수표 배서부분에 대하여 유리한 감정을 하여 그 감정부분과 관련한 부분은 무죄가 된 일이 있는데, 그 감정전에 김형영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감정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며, 김형영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가요.

답 : 당시 직원들이 감정이나 여러가지 문제로 밖에서 경비를 지출한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저로서는 몰랐습니다. 따라서 그런 건으로 김형영을 알지도 못했고 김형영에게 그 건으로 돈을 준 사실은 없습니다.

문 : 피의자가 1989. 2. 27.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에 이송운이 자기앞수표 배서부분의 필적이 피의자의 회사 직원인 이윤희의, 필적이라든가 약속어음 배서부분이 양순희의 필적이라는 등 피의자가 다소 불리한 감정을 한 바 있는데 그 사실을 알았는가요.

답 : 예, 알고 있었습니다.

문 : 그렇다면 피의자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그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차후 감정전이 문제가 된다면 김형영에게 잘 봐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답 : 물론 뚜렷이 그것을 구분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제가 주안점으로 생각한 것은 각서전이었고, 물론 2심재판에서 어떤 감정이 문제가 된다면 김형영에게 잘 보여서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금품을 제공한 의미도 있습니다.

문 : 이행보증각서가 2심에서 문제가 되었고, 그것이 결국 피의자에게 유리한 감정결과가 김형영으로부터 나왔는데 그건에 대하여 별도 부탁한 바는 없는가요.

답 : 그것은 조병길의 부인으로부터 감정 직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돈을 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돈을 두번째 온라인으로 송금한 것이 8월달인데 그때는 그것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따라서 그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김형영에게 포괄적으로 부탁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감정이 된다고 하였을 때 안심을 하였습니다.

문 : 그 이행보증각서 사건으로 별도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아닌가요.

답 : 저는 그 서류가 감정이 된다 하여도 조병길 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정이 잘못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따로 부탁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문 : 그 말은 각서건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답 : 그것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병길이 무슨 수를 썼는지 엉뚱한 감정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방관만 할 수 없었던 것이지 절대 문제가 있는 문서는 아니었습니다.

문 : 앞서 진술한 건 외에 문서의 진정성립을 문제삼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그외에도 제가 공갈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한치준이 면회를 와서 수사관실에서 만났는데 그때 한치준이 자신이 책임지고 일을 불태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조남근이 면회왔을 때 한치준이 요구하면 요구하는대로 1억원 한도내에서 주라고 부탁을 해놓고 있는데, 이를 후에 서울구치소로 찾아와 자신이 김종필 총재 오른팔인 이창열과 협력하여 손을 써보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 하여 경비문제는 수원에 있는 조남근과 상의하라고 하였는데, 조남근이 한 치준에게 금 8천 3백만원을 주고 제가 보석으로 나온 다음에 한치준이 있는 자리에서 이창열에게 2천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준 영수증의 의미로 현금보관증을 받았는데, 이창열측에서 그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여 그것이 먼저 대검찰청 과학수사운영과에서 진정성립되었다는 감정이 되고, 그후 재판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가 되어 감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 피의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된 상대방들이 한결같이 피의자가 유리한 자료로 제출한 건에 대하여 위조가 되었다는 주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피의자가 제출한 문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요.

답 : 상대방이 여러 사람인 것 같으나 임봉규나 조병길은 처음 공격하는데 보조를 같이 한 사람이고, 양승학과 한치준도 결국 신영건설이 건설중이던 진주멘션아파트를 놓고 저와 다툼이 있었던 사람이거나 신영건설의 운영권을 놓고 저와 대립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로 결국 저를 공격한다는 의미에서는 한뿌리로 그들이 보조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임봉규, 양승학, 조병길, 천규순 등이 저를 공갈로 무고하여 구속시킬 때나 저의 회사를 말아먹을려고 소송을 하거나, 또는 양승학이 저를 상대하여 아파트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송과 관련하여 양승학이 조병길에게 혐조하면 2억원을 주고, 만일 양승학이 이행하지 않으면 임봉규가 그 돈을 지급하겠다는 이행보증각서

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공동보조를 취한 전형적인 증거입니다.

문 : 이행보증각서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임봉규 등은 다투고 있지 않은가요.

답 : 그것은 감정결과나 입수경위를 살피면 틀림없는 문서입니다.

문 : 피의자가 문제된 위 감정건은 모두 김형영이 판여하였는데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가요.

답 : 처음에 김형영이 관여한 것은 우연이라고 보여지고 그 후에는 저와 접촉한 바 있으므로 김형영이 배려를 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문 : 피의자가 김형영과 만난 것은 몇회나 되는가요.

답 : 다섯번이나 여섯번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그렇다면 위에서 피의자가 제공하였다며 인정하는 것 이외에 금품을 더 제공한 사실은 없는가요.

답 : 위 사건 외에는 더 없습니다.

문 : 위 건 외에도 양승학이 자기앞 수표에 대한 감정시 피의자에게 유리한 감정을 부탁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송운이라는 사설감정업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이송운이 이인환을 통하여 돈을 김형영에게 제공한 사실을 아는가요.

답 : 저는 교도소에 있으면서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사설감정을 몇군데 의뢰하고 그로 인하여 경비를 지출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얼마의 경비를 누구에게 썼는지에 대하여 보고받은 기억이 없고 보석으로 석방된 후 한 30만원을 경비로 썼는데 사설감정업자 3명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고, 그외에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문 : 위에서 인정하는 회수보다 김형영을 만난 회수가 많은 것은 아닌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문 : 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 :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문 : 더 할 말이나 유리한 증거는 없는가요.

답 : 이번 일이 연일 언론방송에서 보도될 정도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음에 대하여는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도 임봉규 등에게 방어적인 의미에서 대응한다는 게 사리분별력을 잃어 이런 일을 저지렀습니다. 김형영실장도 이번 일로 공직자로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음에 대하여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처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하다.

진술자 이 세 용

1992. 2. 16.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양종모

검찰주사 정비호

* 주민등록증 사본 <생략> (공판기록 294)

■자료 마-1-22 (공판기록 2955~2967) 증제27의 20

피의자 신문조서

성명 양종석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에 대한 제3자 뇌물수교부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2. 2. 16.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공성국은 검찰주사 윤시균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거를 말하시오.

답 : 성명은 양종석 (梁宗錫)

연령은 37세, 생년월일 1954. 10. 3. 일생,

직업은 건설업(주식회사 중앙건설)

직장 전화번호는 :

본적은

주거는

자택 전화번호는 :

입니다.

검사는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 즉 피의자는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 피의자는 형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1973.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0. 5. 6. 같은 법원에서 상해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8. 같은 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추징 40,000원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고, 81. 2. 중순 만기출소하였고, 1981. 4. 19. 같은 법원에서 횡령으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1973년부터 1989년도까지 같은 법원에서 항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으로 벌금 선고받은 것이 10회 정도 되고, 그외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은 것도 여러 번이 있는데 그외에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문 : 피의자의 가족관계는 어떠한가요.

답 : 위 주거지에 처 채경숙 37세, 아들 양승원 6

세, 딸 양숙명 3세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문 : 재산 정도 및 생활상태는 어떠한가요.

답 : 부동산으로 유성에 여관부지 130평에 여관건물 시공중에 있는 것이 싯가 15억원 상당, 위 주거지 아파트 18평 싯가 6,000여만원 상당이 있고, 유성에 대지 80평 싯가 2억원 상당이 있고, 월수입은 건설업을 하여 한달에 약 200만원 정도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 : 학력, 경력, 병력, 종교관계 등은 어떠한가요.

답 : 학력은 대전 서중학교 2학년 중퇴하였고, 병력은 소집면제를 받았고, 경력은 1981. 3. 경부터 1983. 12. 까지 사이에 대전에 있는 경진건설(주)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부도발생으로 그만두고, 1984. 12.부터 1987. 2. 경까지 사이에 서울의 한양건축(주) 대전소장으로 근무하였고, 그후 1987. 11. 경 대전 중구 대흥동 181-1 소재 (주)중앙토건이라는 단종토건회사를 설립하여 제작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1988. 10. 경 (주)중앙개발로 상호 변경하여 토풍, 철근콘크리트, 포장유지보수공사를 하여 오고 있으며, 종교는 불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정당 및 사회단체 가입 사실이 있나요.

답 : 민자당 중앙위원회로 있고 대전지방 생생보호위원회 서구 부회장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이세용과는 어떠한 관계인가요.

답 : 예, 이세용은 대전 유성에 있는 선배 차준남의 소개로 15년전부터 알고 있는데 이세용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1988. 2. 15. 경부터 이세용이 실제 주주인 신영건설(주)의 대표이사를 제가 맡아서 운영하여 달라고 하여 대표이사로 운영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이세용은 건설회사를 하여 오면서 회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문 : 피의자는 이송운을 아나요.

답 : 예, 서울에서 한국문서감정원장으로 사설감정인으로 있는 사람인데 이세용이 구속되어 재판받을 때에 필적감정을 의뢰하면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문 : 피의자는 이세용이 구속재판 중일 때에 이세

용의 재판과 관련하여 동인의 필적감정을 의뢰하였던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시오.

답 : 예, 이세용이 1988. 5. 11. 임봉규라는 사람에게 공갈로 돈을 받은 사실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어 당시 이세용의 변호사이었던 광동훈변호사와 상의하여 필적감정을 하여 그 감정서를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 이세용에게 유리하겠다고 하여 위 이송운이 운영하는 한국문서감정원에 찾아가 감정의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 : 당시 이세용이 재판받는 사건의 내용은 어떠한가요.

답 : 이세용이 임봉규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 썼는데 그 수표의 배서된 필체가 이세용의 필체라고 하여 구속되었는데 본인은 자기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여 변호사와 상의를 하던 중 사설감정인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서를 받아 본인의 필적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재판에 유리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감정을 의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이송운에게 감정을 의뢰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해보시요.

답 : 예, 1988. 6. 초순경 시청앞 검찰청 후문 부근에 있던 광동훈 변호사 사무실에서 문제된 수표에 배서된 필체를 감정하여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였는데 변호사는 사설감정인의 감정을 받고,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도 받기로 하고, 연구소의 감정의뢰는 변호사가 법원에 신청하여 감정의뢰하는데 동 감정에 대하여도 이송운과 상의하여 동인이 손을 써주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송운에게 감정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문 :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이세용과도 상의를 하였던가요.

답 : 예, 그 당시에는 이세용씨가 구속된 직후이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과 빨리 재판을 받고 나오기 위하여 자주 면회를 하였으며 특히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특별면회를 하여서 이세용과 상의를 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가 필적감정을 의뢰하면서 감정료 등에 대하여는 어떻게 협의하였나요.

답 : 1988. 6. 초순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한국문서감정원 사무실에서 이송운씨를 만나 이세용의 사건을 설명하고 필적감정을 의뢰하면서 사설감정인은 3명의 감정을 하여 주고, 또 법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도 필적감정의뢰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이세용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되도록 빨리 해당하고 하였더니 감정은 자기가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나 자리를 믿으라고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전에 위 연구소에서 필적감정을 하였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도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니까 감정료만 많이 달라고 하여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문 :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공무소인데 일반인인 이송운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던가요.

답 : 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은 법원이나 검찰에서 신청하여야만 되는데 그 신청을 하여도 감정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려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세월없이 걸리나 자기가 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필적감정을 하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도 전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자기가 부탁하면 빨리 되니 염려말라고 하였습니다.

문 : 감정결과는 어떠해도 감정결과만 나오면 이세용의 재판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가요.

답 : 아닙니다. 그 수표를 이세용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결과, 다시 말씀드려 이세용의 필체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와야만 재판에서 이세용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 : 감정료는 어떻게 하기로 하였나요.

답 : 예, 처음 변호사로부터 감정료에 대하여 들기로는 전당 15만원 정도라고 하였는데 이송운이 감정재료를 들통보기로 살펴보고는 그것은 틀림없이 이세용의 필체가 아니라고 하면서 염려말라고 하여 저는 이세용의 필체가 아니면 석방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감정료에 대하여는 염려말라고 하였더니 이송운이 감정료는 한 사람당 200만원을 주고 자기에게는 별도

로 더 주어야 한다고 하여 제가 감정결과가 좋으면 한 1,000만원이라도 줄 수가 있다고 하여 그 정도 선에서 감정료를 정하였는데 그 감정료는 이송운 외 2명의 사설감정인의 감정료와 나중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할 감정에 대하여도 손을 써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문 : 감정료를 지불한 일시, 장소 및 금액은 어떠한가요.

답 : 예, 1988. 초순경 위 이송운의 사무실에서 처음 찾아가 감정의뢰를 할 때에 감정료로 250만원을 10만원권 수표와 현금을 섞어서 이송운에게 주었고, 그후 동년 8. 22.에 이송운의 조홍은행 덕수지점 온라인통장으로 200만원을 송금하였고, 동년 9. 22.에 같은 지점으로 금 250만원을 송금하여 모두 7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그외에 그 당시에 수시로 변호사 사무실에 들리면 이송운의 사무실에 들러서 이송운이 회식비, 술값 등을 요구하여 아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이어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등 모두 150만을 더 주어 모두 제가 이송운에게 주었던 돈은 850여만원을 주었던 것입니다.

문 : 당시 이세용의 사건 기록을 보면 이송운, 신찬석, 이인환 등 3명의 감정서는 1988. 6. 16.에 작성되어 변호사가 동년 6. 27.에 법정에 제출하였던 것이고, 1988. 8. 22.에 이세용의 변호인이 법원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을 신청하였고 동 감정신청에 따라 동년 9. 23.에 동 연구소의 감정결과가 법원에 회시되었던 것인데 어떠한가요.

답 : 수사기록에 나와 있으면 그 내용이 맞을 것이고, 저의들이 이송운에게 감정의뢰한 것이 1988. 6. 초순경이니까 6. 10.경으로 기억되고, 감정결과는 일주일정도 걸려서 6. 16.경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그러면 피의자는 1988. 6. 16. 이후에는 이송운 등이 하는 사설감정료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설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된 후에 국과수의 감정의뢰를 하기로 하였던 것 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국과수 감정에 관하여 돈을 주었던 것입니다.

문 : 이송운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들과는 1988.

6. 10.경 사설감정인 3명에게 감정의뢰를 하는 것으로 서 이송운, 신찬석, 이인환 등이 감정하였고, 감정료로는 한 사람당 80만원식으로 하여 240만원이나 250만원으로 감정료를 정하고, 동 감정료는 의뢰하는 날 피의자로부터 받았던 것이고, 그 이후에 피의자가 다시 찾아와 사설감정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니 이번에는 변호사가 국과수 감정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데 동 감정결과도 마찬가지로 빨리 나올수 있도록 손을 써달라고 하여 그경비는 약 5~600만원 정도로 정하여 국과수감정의뢰한 8. 22에 200만원 9. 22에 250만원을 송금받아 모두 450만원을 받았던 것은 국과수의 감정에 대하여 손을 써달라는 명목으로 주어서 받았던 것 이라는데 어떠한가요.

답 : 처음에 감정료를 정할 때에 국과수감정에까지도 책임을 지기로 하였는데 사설감정이 끝나고 나서는 국과수 감정만 남아 있으니까 그 450만원은 국과수 감정에 손을 쓰기 위한 돈은 맞습니다.

문 : 그렇다면 위 450만원은 국과수에서 필적감정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에게 갖다주라는 돈인가요.

답 : 예, 그 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필적감정업무를 취급하는 직원들에게 갖다 주고 감정을 잘 봐 달라고 주라는 돈이었습니다.

문 : 그러면 당시 피의자는 위와같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도 이세용에게 말하고 사용하여 왔나요.

답 : 아닙니다. 88. 6. 초순경 변호사로부터 감정을 하고 국과수 감정은 반드시 들어가야만 재판에 유리하다고 하여 이송운에게 가기 전에 이세용에게 면회가서 그러한 말을 하였더니 그러면 빨리 감정의뢰를 하라고 하였고, 그래서 이송운에게 가서 상의하였더니 감정료가 너무 비싸서 고심하다가 감정결과만 좋게 빨리만 나온다면 이세용이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다는 것이 기뻐서 감정료를 지급하고 다음날 구치소에 면회가서 이세용에게 감정료에 대하여 말하고 국과수의 감정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국과수의 감정을 좋게 받으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빨리 하도록 하라고 하여서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문 : 그러면 그와같이 사용한 돈은 누구의 돈으로 사용하여 왔나요.

답 : 제가 운영하고 있던 신영건설도 이세용의 것이고, 이세용이 구속되어 있으니까 제가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여 반기로 하고 저의 돈도 썼습니다. 그러나 이세용에게 빌려주고 사용한 것입니다.

문 : 피의자가 이송운에게 주었던 위 450만원은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에게 이송운을 통하여 갖다주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위 연구소의 직원들은 자기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으라는 말인가요.

답 : 그것은 이송운이 하여 주기로 하여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문 : 이송운이 그 돈을 국과수에 갖다 주었다고 하던가요.

답 : 이송운이 대전으로 여러번 돈을 빨리 보내달라고 저에게 독촉을 하였는데 돈을 빨리 보내 주어야 국과수의 일을 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던 것으로서 그 돈을 송금하여 주면 나머지는 이송운이 알아서 해준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그 돈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은 국내의 최대 공신력이 인정되어온 기관으로서 그곳에서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공무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답 : 예. 알고 있습니다.
문 : 어떠한 형태로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는 금품을 제공할 수가 없고, 또 위 연구소의 감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재판이나 수사관계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인데 돈을 주어 업무를 처리케 한다는 것은 그 업무를 원활히 취급할 수 없게 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본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 잘못했습니다. 이세용의 재판이 유리하게 빨리 끝나도록 하기 위하여 하였던 것인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 : 이상 진술은 모두 사실인가요.
답 : 예. 사실입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

한대로 오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계 하다.

진술자 양 종석

1992. 2. 16.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공성국

검찰주사 윤시근

□자료 마-1-23 (공판기록 2968~2983) 증제27의 21

피의자신문조서

주민등록번호

성명신찬석

위의 사람에 대한 제3자 뇌물교부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2. 2. 16.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이원수는 검찰주사(보) 정창호를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거를 말하시오.

답 : 성명은 신찬석,

연령은 63세, 생년월일 1928. 10. 11. 생,

직업은 무직,

본적은

주거는

자택 전화번호는

입니다.

검사는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 즉 피의자는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 피의자는 형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해당없습니다.

문 : 피의자의 학력을 진술하시오.

답 : 1955년도에 조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문 : 병역관계를 진술하시오.

답 : 면제를 받았습니다.

문 : 경력관계를 진술하시오.

답 : 1972. 5. 10~1983. 12. 31.경 사이에 노동부 산업체활원 훈련과 주임교사로 종사를 하였고, 1988. 10.경부터 1991. 1.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서소문동 4소재 한국빌딩 302호의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을 경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가족관계를 진술하시오.

답 : 자 신승선(35세) 회사원, 자 신우탁(21세) 재수생, 妻 신현순(31세) 가정주부, 女 신희원(28세) 서독 유학생 등이 있습니다.

문 : 재산정도는 어떠한가요.

답 : 없습니다.

문 : 신봉하는 종교는 있는가요.

답 : 불교신자입니다.

문 :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문 : 훈장이나 기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문 : 건강상태는 어떠한가요.

답 : 중풍으로 쓰러져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는 하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지만 상태가 좋아지고 있으며 그외의 장애는 없습니다.

문 : 피의자가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을 경영한 기간은 어떠한가요.

답 : 1988. 10.경부터 1991. 1. 8.경까지 사이입니다.

문 : 직원은 누구가 있었는가요.

답 : 감정인 이인환이 자기의 고객에 대하여 감정을 해주고 그 수입을 자기가 차지하는 한편 저의 업무가 많을 때는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으며 고원배라는 전국인판업연합회지 편집인이 가끔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 : 위 감정원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였는가요.

답 : 문서에 기재된 필적이나 날인된 인영의 이동여부, 작성연도 등에 대하여 의뢰인이 의뢰에 따라 감정을 해주는 업무이었습니다.

문 : 감정료는 어떠하였는가요.

답 : 연대감정은 한건당 40만원을, 그외의 감정은

20만원씩을 받았고, 문서의 매수가 많을 경우 일정금액을 추가하여 감정비를 받았습니다.

문 : 피의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실장인 김형영을 아는가요.

답 : 김형영은 제가 인장업연합회 부회장을 하던 1970년경 그가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알게 되었고, 1974년경 위 연구소의 문서감정 실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제가 추천한 사실이 있어 친하게 지내게 되었으며 그외에도 최성, 양후열이라는 위 연구소의 직원을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문 : 피의자는 문서 등의 필적감정 등과 관련하여 감정의뢰인들로부터 위 김형영에게 전달할 뇌물을 줄 테니 그에게 부탁을 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김형영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피의자에게 위 부탁과 함께 위 금원을 교부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 이귀덕, 양승호라는 감정의뢰인입니다.

문 : 피의자가 이귀덕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일시, 장소를 진술하시오.

답 : 1990. 7. 31.경 저의 사무실입니다.

문 : 부탁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요.

답 : 그녀가 자기의 시동생이 남편 명의의 유서를 위조하였다고 전북도경에 고소를 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위 경찰국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위 유서에 대하여 감정의뢰를 하여, 위 김형영이 전주로 출장을 와 감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에게 출장에 필요한 여비를 줄테니 자기의 주장처럼 위 유서가 위조된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이었습니다.

문 : 위와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게 된 경위를 진술 하시오.

답 : 1989. 11. 3.경 이귀덕으로부터 남편 조종섭이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가 위조된 것 같으니, 조종섭의 유서에 기재된 '조종섭'이라는 필적과 전에 그가 경찰서에서 진술한 조서말미에 기재되어 있는 '조종섭'이라는 필적의 이동여부, 유서에 현출되어 있는

'조종섭'의 인영과 시동생 '조종수'의 인영이 동일인이 동일기법으로 조작한 인장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감정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아 1989. 11. 7.경 필적은 상이하고, 인영은 상호 동일인이 동일한 기법으로 조작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와 그녀에게 알려준 다음 그녀를 잊고 있었는데 1990. 7. 하순 일자불상경 그녀가 저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와 자기가 저의 감정결과를 신빙하고 이를 근거로 조종수를 전북도경에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소를 하여 그 경찰국에서 조사를 진행하던 중 위 문서에 대하여 위 연구소에 감정의뢰를 하게 되어 국과수 직원이 전주로 출장을 와 감정을 하게 되었다면서 언제 감정을 하러 출장을 오는지 알아보아 달라고 하여 위 연구소에 근무하는 김형영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더니, 마침 그가 같은 해 8. 2.경 전주로 출장을 가 감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그녀에게 제가 확인한 내용을 전화상으로 알리자 그녀가 1990. 7. 31.경 저의 위 사무실에 들러 위와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게 되어 제가 그렇게 해주기로 승락을 한 것입니다.

문 : 피의자가 이귀덕으로부터 김형영에게 전달해 달라는 금원을 교부받은 일시, 장소, 그 금액 등을 진술하시오.

답 : 제가 부탁을 받은 그날 같은 장소에서 금 5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문 : 피의자가 그녀로부터 요청을 받은 위와같은 내용의 부탁을 김형영에게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 일시, 장소를 진술하시오.

답 : 1990. 8. 1.경 저의 위 사무실에서 서울 강서구 신월동 소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전화를 걸어 김형영에게 위와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가 김형영에게 금원을 교부한 일시, 장소를 진술하시오.

답 : 1990. 8. 1.경 서울신탕은행 남대문지점에 개설된 김형영의 계좌(번호 37907-02-214201)로 35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문 : 이귀덕으로부터 금 50만원을 교부받아 김형영에게는 금 30만원만 전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부탁하는 사람을 김형영에게 소개할 경우 그

가 받는 금원의 30%를 소개비로 받기 때문에 김형영과 상의하여 30%인 금 15만원을 공제한 금 35만원만 교부한 것입니다.

문 : 이귀덕도 피의자가 금 15만원을 소개비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요.

답 : 그녀는 저에게 금 50만원을 김형영에게 전달해달라고 준 것이고, 저 또한 소개비문제는 거론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아마 50만원 전부가 김형영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김형영에게 직접 전달을 하지 아니하고 송금을 한 이유는 피의자가 평소 위와같은 내용의 부탁을 자주 하면서 위 계좌로 일정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답 : 제가 평소 김형영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없고, 제가 그에게 부탁을 할 당시 그가 위 계좌번호를 가르쳐주며 그 계좌로 입금을 시켜줄 것을 원하였기 때문에 무통장입금을 시켜준 것입니다.

문 : 혹시 위 금 35만원은 전에 김형영으로부터 빌린 채무의 변제로 송금을 한 것은 아닌가요.

답 : 저는 지금까지 김형영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사실이 없으므로 전에 빌린 돈을 갚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 : 피의자는 혹시 위 금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없었는가요.

답 :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 : 위 유서의 감정결과는 어떠하였는가요.

답 : 1990. 8. 8.경. 이귀덕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더니 위조된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문 : 이귀덕이 피의자를 통해 위와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고 김형영에게 뇌물을 주었기 때문에 김형영이 허위감정을 하였기 때문에 위와같이 이귀덕에게 유리한 감정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아닌가요.

답 : 그 감정결과는 허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며, 다만 김형영이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감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귀덕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문 : 피의자가 양승호로부터 부탁을 받은 일시, 장소를 진술하시오.

답 : 2회에 걸쳐 부탁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1990.

9. 초순 일자불상경 저의 위 사무실이고, 두번째는 1990. 11. 하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입니다.

문 : 첫번째 부탁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요.

답 : 양승호가 1990. 1. 31.경 서울 형사지방법원에 사문서위조 등 행사죄로 불구속기소가 되어 공판 계속중에 있었는데, 위 김형영이 문제의 사문서인 보관증에 대하여 감정을 한 결과 양승호가 변조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결론이 나게 되어 양승호에게 불리하게 되었고, 위 법원에서는 김형영에게 감정과 관련하여 사실조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양승호는 김형영에게 전달할 사례비 금 100만원을 줄테니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가 오게 되면 자기에게 불리하지 않는 내용을 기재해달라는 부탁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문 : 부탁을 받은 경위를 진술하시오.

답 : 제가 1988. 11. 2.경 양승호로부터 어음보관증의 '위 어음을 현금으로 받는 조건임'에 대한 작성연도, 위 문구와 그 문서의 품명란과 발행인란에 기재된 필체의 이동여부를 감정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동시에 작성이 되었고 동일한 필적이라는 감정결과를 얻어 같은 달 10.경 이를 발송하였는데, 위 연구소의 감정결과는 저의 감정결과와 정반대로 나타나게 되어 양승호에게 불리하게 되자 그는 법원으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조회서상에 불리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되게 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형영에게 전달할 사례비를 줄테니 위 조회서상에 양승호에게 유리한 기재내용을 적어달라는 부탁을 저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문 : 양승호로부터 피의자가 위 금원을 교부받은 일시, 장소를 진술하시오.

답 : 1990. 9. 초순 일자불상경 저의 위 사무실에서 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같은 부탁을 김형영에게 하고 양승호로부터 제공받은 금원을 전달하였는가요.

답 : 예, 제가 김형영에게 직접 부탁을 하고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이인환을 통하여 부탁을 하고 돈을 전달한 것입니다.

문 : 이인환에게 부탁을 하고 금원을 교부한 일시, 장소는 어떠한가요.

답 : 양승호로부터 부탁을 받은 그날 저의 위 사무

실에서 이인환에게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고 금 7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문 : 100만원을 받아 이인환에게 70만원만 전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통상 30%의 소개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금 70만원만 전달을 한 것입니다.

문 : 양승호는 피의자가 100만원 전액을 김형영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 아닌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이인환은 김형영에게 피의자로부터 들은 내용의 부탁을 하고 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는가요.

답 : 예, 이인환은 그날 저녁 8시에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 소재 유진상가 부근의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김형영을 만나 그에게 위와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고 금 70만원을 전달하였다고 저에게 말을 한 사실이 있어 저는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김형영은 양승호의 부탁에 따라 사실조회의 내용을 그에게 유리하게 기재하였다고 하던가요.

답 :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문 : 양승호로부터 피의자나 김형영이 위 감정과 관련하여 중인으로 위 법원에 출석을 할 경우 유리하게 중언을 해달라는 내용의 부탁과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닌가요.

답 : 위 금원은 중언파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임입니다.

문 : 양승호로부터 받은 두번째의 부탁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 위 김형영의 감정결과가 양승호에게 불리하게 되자 그는 법원에 재감정이나 재사실조회를 신청할 예정이었는데, 김형영에게 전달할 사례비 금 400만원을 줄테니 이를 김형영에게 전달하여 주고 만약 재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불능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해주고, 재사실조회가 오게 되면 불리하지 않게 내용을 기재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문 : 양승호로부터 김형영에게 전달해달라는 금원을 교부받은 일시, 장소, 금액을 진술하시오.

답 : 1990. 12. 3.경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삼성빌딩 우체국에 개설된 저의 계좌(번호 012658-006447-

17)로 금 200만원을, 같은 달 5.경 같은 계좌로 금 200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문 : 양승호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 400만원을 김형영에게 전달하고 그에게 위와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였는가요.

답 : 제가 직접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이인환을 통해 김형영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문 : 이인환에게 부탁을 한 일시, 장소, 교부한 금액을 진술하시오.

답 : 1990. 12. 4. 17:00경 저의 위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고 금 140만원을, 같은 해 6. 17.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금 140만원을 각 교부하였습니다.

문 : 양승호로부터 400만원을 받아 이인환에게는 280만원만 교부를 하였는가요. 양승호는 400만원 전액이 김형영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 아닌가요.

답 : 양승호는 400만원 전액을 김형영에게 전달해 달라고 저에게 주었지만 감정업계에서는 통상 소개비 30%는 소개인이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120만원을 공제한 280만원만 이인환에게 교부한 것입니다.

문 : 이인환이 김형영에게 위 부탁을 하고 금 280만원을 전달하였다고 하던가요.

답 : 예, 그의 말로는 돈을 받은 날 저녁 8시에 위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김형영을 만나 위와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고 2회에 걸쳐 금 250만원을 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문 : 재감정이나 재사실조회에 있어 김형영이 양승호에게 유리하게 감정이나 회신을 하였는가요.

답 : 재감정이나 재사실조회를 법원이 의뢰하지 아니하여 양승호에게 유리하게 해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문 : 그렇다면 양승호가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터인데 그런 사실이 있었는가요.

답 : 제가 고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양승호가 저의 위 사무실로 찾아 와 저를 만나려고 하였다는 말을 이인환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는데 그후 제가 시끌로 요양차 내려갔기 때문에 아직 까지 양승호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문 : 위 금원은 피의자나 김형영이 감정인으로서 법정에서 양승호에게 대하여 유리하게 중언을 해달라

는 취지로 그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아닌가요.

답 :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이미 저나 김형영이 중언을 마친 뒤였기 때문에 유리한 중언을 위해 돈을 준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유리한 중언을 해달라는 명목을 돈을 주었다면 제가 그 돈을 전부 차지하지 김형영에게 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문 : 그 외에도 피의자가 위 연구소의 직원에게 금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제가 감정업무가 바빠 위 연구소 직원인 최섭에게 제가 의뢰받은 문서에 대하여 감정을 부탁하여 그가 감정을 하고 저의 명의로 감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례비로 1990. 7. 30.경 한국주택운행 서소문지점에 개설된 최섭의 계좌(번호 .

로 금 15만원을 송금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김형영이 위 연구소에서 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위와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댓가로 김형영이 이귀덕이나 양승호에 대하여 허위감정을 해준 것은 아닌가요.

답 : 김형영이 동일한 것을 상이하다고 하거나 상이한 것을 동일하다고 하는 등의 허위감정을 한 사실은 없고 다만 부탁을 한 사람의 문서에 대하여는 더욱 성의를 가지고 빨리 감정을 하며 사소한 문제점이 있어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정도의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문 : 공무원인 김형영의 직무인 감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부탁을 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뇌물을 교부한 것은 잘못이 아닌가요.

답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 : 더 할 말이 나 유리한 증거가 있는가요.

답 :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 한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하다.

진술자 신 찬 석

1992. 2. 16.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완수

검찰주사(보) 정창호

■자료 마-1-24 (공판기록 2984~3003) 증제27의 22

피의자 신문조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양승호

위의 사람에 대한 뇌물공여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2. 2. 16.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권영식은 검찰주사 안경환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본적을 주거를 말하시오.

답 : 성명은 양승호(梁承號), 연령은 44세, 생년월일 1943. 8. 6.생, 직업은 건축자재 생산업.

직장전화번호는 .
본적은 .
주거는 .
자택전화번호는 .
입니다.

검사는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 즉 피의자는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 피의자는 형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1982년 1월 28일 서울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사문서변조 등 죄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받은 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8회의 입건 전력이 있습니다.

문 : 피의자의 약력, 경력은 어떠한가요.

답 : 1972. 2월경 청주대학교를 졸업하고 74. 2월경 충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한 후 79까지 부산

소재 유창철강 경리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86. 1월부터 주식회사 경양 상무이사 87. 5월경 삼진산업 주식회사 전무이사를 거쳐 현재 대전소재 대양인슈주식회사 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문 : 가족관계는 어떠한가요.

답 : 처 강영희(40세), 딸 양민정(16세) 학생, 아들 양희로(14세) 학생 등 네 가족이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 : 재산 및 월수입 관계는 어떠한가요.

답 : 부동산은 약 2억원 동산 약 5천만원, 월수입 약 150만원으로 종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 : 병역관계는 어떠한가요.

답 : 68년도에 보충역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문 :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한 적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문 : 신봉하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답 : 기독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문 : 취미나 기호는 어떠한가요.

답 : 바둑을 즐기며 술과 담배는 하지 못합니다.

문 : 신체는 건강한가요.

답 : 85. 8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7개월간 입원한 이후 별로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문 : 훈장이나 기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문 : 보훈대상자는 아닌가요.

답 : 해당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신찬석을 아는가요.

답 : 예. 제가 형사사건에 휘말려 문서감정 관계로 알게 된 사람입니다.

문 : 피의자는 신찬석에게 문서감정과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실장에게 전달해주라고 금품을 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언제 얼마를 주었는가요.

답 : 90. 9월 초순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칠빌딩 건너편 중앙감정원 사무실에서 금 100만원을 준 사실이 있고 90. 12. 3. 혹석동 우체국에서 또한 12. 5. 삼성빌딩 우체국에서 역시 신찬석의 온라인 구좌에 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송금하여 도합 3회에 걸쳐 500만원

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신찬석을 언제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었는가요.

답 : 제가 1987. 5. 경부터 전북 남원에 있는 삼진산업(주) 전무이사로 취직하여 근무하던 중 위 회사의 공장건물을 신축한 강태호와 공사대금관계로 88. 9. 경 사문서변조행사죄로 고소를 당하여 문서감정을 하게 됨으로써 88. 11. 초순경 찾아가 처음 만나게 된 사람이며 그 이전에는 전혀 모르던 사람입니다.

문 : 피의자는 무슨 이유로 강태호에게 고소를 당하였는가요.

답 : 1988. 7. 24. 삼진산업(주) 공장건설 잔대금 관계로 제가 채무담보조로 회사대리점을 경영하던 엄필례로부터 벌린 약속어음 2100만원짜리를 고소인에게 보관시키면서 저는 보관증을 받고 고소인에게는 보관증확인서를 써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관증의 내용은 검정불펜을 사용하여 한자로 상단에 "보관증" 첫행에 품명: 약속어음 1매 아 00982641, 둘째행에 액면 금 2,100만원정, 삼행에 지급일 1988. 10. 7, 네번 째행에 발행일 1988. 7. 23, 다섯째행에 지급지 농협유성지점, 여섯째행에 발행인 동명가구 엄필례의 어음을 차용조건으로 87가합 450호 사건의 이자포기는 물론 이에 따른 모든 증서 및 서류 전부는 무효로 하며 지급기일 5일전에 반환함과 동시에 잔금 3,071,600원정은 현금으로 받는 조건임이라고 기재하여 작성하였는데 고소인은 위 문구중에서 엄필례 옆에부터 시작된 "의 어음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87가합 450호 사건의 이자포기는 물론 이에 따른 모든 증서 및 서류전부는 무효로 하며" "과 동시에 잔금 3,071,600원정은 현금으로 받는 조건임"이라는 문구는 작성 당시 없었는데 제가 추서하여 내용을 변조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문 : 그러면 그 사건의 조사는 어디서 하였는가요.

답 : 서울지검에서는 삼진산업(주) 가 신설동에 있어 동대문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하였고 그곳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문 : 경찰에서 조사결과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요.

답 : 쌍방의 서류감정결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문 : 어떠한 서류를 쌍방 누구에게 무슨 내용의 감정을 하였는가요.

답 : 고소인은 고소를 하기 전인 88. 8. 25. 서울인 영감정원에서 원장 한용택으로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보관증 작성시 고소인이 가지고 있는 보관증확인서를 쓴 종이위에 바치고 썼으므로 보관증의 변조부분(별지1 적색 표시부분)의 필흔이 보관증확인서(별지 2)상에 나타나는지 여부를 감정의뢰하여 그 결과 필흔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제가 변조한 것이라고 하여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저는 이에 반박하여 88. 11. 10. 위와같이 중앙인영감정원 신찬석에게 본인이 가첨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동시에 연속적으로 동일필기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의뢰하여 그 결과 동시에 연속적으로 동일필기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회보를 받아 제출하여 결국 동 사건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때 검사는 당청 88형제 62783호 사문서변조, 동행사 기록에서 위 별지 1 보관증, 별지 2 보관증확인서를 사본하여 변조한 부분이라는 곳에 적색표시를 하고 본 조서 말미에 편집하였습니다.

문 : 검찰에서는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요.

답 : 쌍방 대질은 물론 수사를 거듭한 결과 조동식 검사께서 결국 89. 1. 31.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문 : 무혐의 결정을 받기까지 신찬석을 만난 적이 또 있는가요.

답 : 만날 필요가 없어 감정 당시 만난 이외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문 : 그후 사건은 어떻게 되었는가요.

답 : 저는 그후 그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고소인이 항고를 하여 89. 7. 경 재기수사명령이 나왔다면 박순웅 형사3부장님으로부터 소환장이 그해 가을경 나왔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부장님께서 다시 위 문제의 변조부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감정한 바와같이 필흔이 나오는지 또한 제가 감정한 바와 같이 동시에 연속필기구로 작성된 것인지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가첨부분 필흔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회신이 왔으며 그것으로 제 범죄사실은 인정하려 하므로 저는 고소인이 보관증확인서 원본을 밀

에 놓고 보관증 사본을 위에 놓고 불펜으로 고소인이 변조를 주장하는 부분을 제외한 곳만 눌러 써서 필흔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검찰에서는 89. 10. 경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변조되었다는 부분의 필흔이 나타나지 않고 또한 그 부분이 일시미상 이후 변조된 것으로 주장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여 결국 90. 1. 31. 저를 불구속으로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문 : 신찬석은 누구의 소개를 받고 만나게 되었는가요.

답 : 아닙니다. 고소인이 별도로 개인감정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저도 전화번호부를 찾아 상담을 한다음 찾아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문 : 감정비는 얼마를 주었는가요.

답 : 감정규정상 15만원을 달라고 하여 15만원을 주고 감정을 하였습니다.

문 : 6차공판까지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요.

답 : 90. 4. 12. 제1회 공판이 있었고 그곳에서 판사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았고 검사는 저의 범죄사실을 물어보았으나 저는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연기되었고 다음 기일이 5. 10.로 잡혔으나 변호사가 재판이 겹쳐서 연기신청을 하여 5. 31. 제3회 공판이 있었는데 그때는 변호사가 제 입장에 서서 질문을 하여 그날은 변호사 신문으로 끝나고 검사는 고소인이 강태호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저희 변호사는 부사장인 김용승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재판기일을 6. 21.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한경수가 사임하고 또한 강태호가 송달불능이 되어 재송달을 하느라고 또 재판이 연기되었고 8. 23.로 5차공판이 지정되었으나 새로 선임된 이인제 변호사가 다시 재판을 연기하여 다시 5차공판 기일이 8. 30.로 잡혀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강태호는 증인으로 나와 저에게 상당히 불리한 증인을 하였고 부사장인 김용승은 저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여 팽팽히 맞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 : 이인제 변호사가 6차공판에서 재판부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무슨 내용의 사실조회인가요.

답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89. 11. 3. 서울지방

검찰청의 감정을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였는데 보관확인서(별지2)상에 나타나있는 필흔이 보관서(별지1)를 작성할 때 생긴 것인지 아니면 사후에 보관서의 사본을 보관확인서 위에 놓고 변조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만 다시 눌러쓰므로 만들어낸 필흔인지를 감정의뢰전 이해관계자 한 사람의 수중에 보관서의 사본과 보관확인서 원본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보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 : 언제 이인제 변호사를 선임하였는가요.

답 : 90. 6 중순경 선임하였습니다.

문 :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위와같은 내용의 사실조회를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는가요.

답 : 필흔(필암)감정이 불리하게 나오므로 변호사에게 분명히 필흔을 조작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자 변호사는 이번 공판에 나가 증인신문도 하고 위와같은 내용의 사실조회도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문 : 언제쯤 변호사와 그러한 내용의 대화를 하였는가요.

답 : 90. 8 중순경 사건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 :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난후 신찬석을 만난 사실을 아는가요.

답 : 90. 8 중순경에 서소문 칼빌딩 건너편 신찬석의 사무실로 찾아가 만났습니다.

문 : 검찰 조사도중에서 감정할 때 신찬석을 만나고 그 후 처음 찾아간 것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찬석을 두번째로 찾아간 것입니다.

문 : 왜 신찬석을 찾아갔는가요.

답 : 신찬석이가 검찰에서 문서감정을 하였고 아무래도 문서감정계통에는 잘알 것 같아 위와같이 사실조회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이러한 회신이 올 것 같은지 물어도 보고 상의하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문 : 신찬석과는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가요.

답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김형영이라는 사람이 회보한 감정내용이 저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태인데 위와같은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는데 어떻게 회신이 올지 예측이 궁금하여 찾아왔다고 하니까 자신이 김형

영씨를 잘알고 있는데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들어갈 때도 자신이 추천을 해주었고 5공화국에 들어서 허위감정으로 구속되었을 때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것을 항소하였을 때 자신들이 유리한 증언을 해주어 무죄를 받아 복직한 사람으로 자기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할 것이라고 하여 제가 그러면 그분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사정하였더니 신찬석이가 김형영실장에게 용돈을 좀 주자고 하여 돈을 갖다 주기로 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 : 그러면 신찬석에게 김형영에게 주라고 금품을 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다음날 100만원을 사무실에서 신찬석에게 주었습니다.

문 : 어떠한 돈으로 주었는가요.

답 : 10만원짜리 수표 8매 현금 20만원을 봉투에 넣지 않고 지갑에서 꺼내주었습니다.

문 : 그돈을 주게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 9월 초순경 위와같이 도와달라고 사정하니까 신찬석은 김실장과 잘 알고 있으나 모든 일이 빈손으로 되겠느냐고 은근히 돈을 갖다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귀띔을 하여 제가 얼마정도 갖다드리면 되겠느냐고 하니까 노골적으로 100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시간이 없으니 미리 준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돈을 해드리겠다고 하고 돌아온 2일후 돈을 준비하여 신찬석의 사무실을 찾아가 돈을 전내주면서 사실조회공문이 법원에서 왔는지 확인좀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신찬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실장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때 아마도 김실장은 공문이 도착했다고 하는 것 같았고 알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저는 혹시 신찬석이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고 거짓말로 저에게 공문이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생겨 신찬석에게 변호사가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모르니 알아봐달라고 하여 다시 김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용을 읽어보아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김실장이 내용을 읽어주었는데 신찬석이는 읽는 내용을 전화로 반문하는데 보니까 변호사가 보낸 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아 그때 완전히 신찬석을 믿고 잘좀 선처해 달라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문 : 돈을 준 구체적인 취지는 무엇이었나요.

답 : 신찬석이가 감정하는 사람이 회신을 할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나면서 감정 회신을 기술적으로 보내면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신찬석과 상의하여 돈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문 : 그러면 신찬석이가 돈을 주었다고 하던가요.

답 : 저는 신찬석이가 실제로 김실장과 통화하여 사실조회상 내용도 읽어주고 하여 확실히 김실장과 박역한 사이로 알고 회신에 대하여는 저에게 유리한 회신이 오리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회신이 온 것을 알기 전까지는 신찬석에게 찾아가거나 전화조차 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 언제 회신이 온것을 알았는가요.

답 : 6회 공판기일 9. 27. 재판을 받고나서 이인제 변호사가 사실조회회신이 저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나왔다고 하여 알게 되었으며 할 수 없이 변호사는 그 날 신찬석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문 : 그러면 신찬석에게 왜 돈까지 주고 부탁하였는데 저에게 불리한 회신이 왔는지 항의하지 않았는가요.

답 : 물론 재판이 끝나고 다음날인가 신찬석을 찾아가 김형영이가 저에게 아주 불리하게 회신을 하여 증인으로 신찬석을 신청하였다는 말을 하고 왜 그렇게 회신이 되었는지 항의를 하니까 분명히 돈을 건네주었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대신 자신이 증인을 유리하게 서주겠다고 하여 일단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후일 김형영이가 증언을 서고 난 다음에야 비로서 검찰에서 재기수사를 담당하던 성명불상 계장이 국과수 김실장으로부터 허위문서판별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 제 사건에 대하여 감정이 가능한지를 질문하였고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여 그 계장의 견의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게 되었기 때문에 번복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 : 이인제 변호사는 신찬석의 증언을 들은 다음에 다시 김형영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어떻게 하여 김실장을 증인으로 세우게 되었

는가요.

답 : 신찬석은 증인으로 나가 저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실조회 회신에 대하여 상당히 신경을 썼으므로 신찬석이가 증인을 하기 바로 며칠전 신찬석을 찾아가 김실장의 사실조회회신이 중요한데 변호사가 김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저에게 증언을 유리하게 해줄 것인지 상의하였더니 김형영에게 일단 돈을 받은 사실이 있으니 자기가 연락하여 저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말아주겠다고 하므로 김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문 : 김형영이가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였는가요.

답 : 예. 다음 기일인 8회 공판에 김형영이가 나와 증언을 하였습니다.

문 : 증언내용이 피의자에게 어떠하였는가요.

답 : 저에게 아주 불리한 증언을 하여 저는 오히려 증인신청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인제 변호사는 화가 나서 김형영에게 그렇다면 증인은 사본으로 조작하여 필흔(필암)을 만든 것과 원본에서 나온 필흔을 구별할 수가 있으며 그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고 하자 역시 김형영이는 뚜렷한 과학적 근거는 없으나 경험속에 비추어 식별할 수가 있다고 하여 신문을 마쳤습니다.

문 : 그 공판은 증인신문을 마치고 결심이 되었는가요.

답 : 이인제 변호사는 재판부에 과연 증인이 사본으로 조작한 필흔과 원본 필흔을 식별할 수가 있는지 실험을 신청한다고 하자 재판장은 변호사에게 그렇다면 지금 증인의 증언은 배척하느냐고 물어보았고 변호사가 배척보다도 실질적으로 식별이 가능한지 시험을 하자고 신청을 하게 되었을 때 재판부에서 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상의를 하더니 18일 후인 12.10.로 날자를 잡아서 피고인인 저를 포함하여 위와같은 실험에 자신이 있을 만한 3명 불러다가 판사실에서 검사 입회하에 실험을 하여 검사와 판사만 알수 있도록 비밀표시를 한 다음 과연 진의를 식별할 수 있는지 증인에게 의뢰하자고 결론을 모았던 것입니다.

문 : 신찬석에게 그후 또 돈을 주게 된 경위는 어

떠한가요.

답 : 김실장이 그렇게 중언을 한 후 바로 신찬석에게 찾아가 도대체 김실장이 본인과 무슨 철천지 원수가 겼길래 그렇게 중언을 하느냐면서 오히려 돈을 주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되었다고 항의하여 이번에는 김실장을 법원에 신청하여 과연 진의의 구별을 할 수가 있는지 실험하기로 하였는데 맞추지 못한다면 공무원생활이 끝나고 매장이 될 것이라고 하였더니 신찬석이는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그 친구가 이상한 사람이라면서 돈을 받아 먹고도 사실조회회신은 물론 중인까지 그렇게 하였더니 골탕을 먹이자고 동의를 하더니만 상대편에게 먼저 돈을 받아먹었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였으며 며칠후에 만났을 때 김실장을 만나보았느냐고 하였더니 그때서야 비로서 검찰직원이 교육도중 질문을 하여 공표된 사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도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돈 100만원보다는 위와같이 정해진 날짜에 실험을 하는 문제가 더 급해졌기 때문에 신찬석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뒷전으로 미룬 채 사본위에 결혼을 만든 것과 원본 밑에 나타난 결혼을 구별하기 위한 실험을 하기 위하여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람을 구해줄 수가 있으느냐고 신찬석에게 물었더니 글씨를 쓰는 사람을 필경사라고 하는데 필경사를 두 명 구하여 연습을 시켜 놓겠다고 하여 저는 그후 계속 필경사를 구했느냐고 전화 등 연락을 하였더니 아직 못 구했다고 하여 재판부에서 정한 날자는 다가오고 조금한 마음에 12. 1. 경 신찬석의 사무실에 갔더니 그가 하는 말이 필경사를 구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일하는 이인환씨와 자신과 저와 3명이서 그날 나가서 쓰면 된다고 하면서 신찬석이는 김실장을 만나고 왔다면서 만약 김실장이 전분을 맞추지 못한다면 양승호가 목아지를 떼겠다면서 벼르더라고 하였더니 김실장이 하는 말이 만약 감정불능으로 회보를 하면 자기는 망신을 당하지만 만약 못 맞춘다면 자기가 처명상을 입게 되고 또한 맞춘다면 양승호가 실험을 살게 되는데 처명상을 당하는 것보다는 다소 망신을 당하는 편이 낫지 않느냐고 하면서 서로 좋게 잘해보자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신찬석 자신이 설득하여 감정불

능으로 나오도록 말을 해놓았으니 김실장에게 인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하므로 저는 돈으로 타협을 보자는 것으로 즉감하고 김실장에게 얼마를 갖다주면 되겠느냐고 하였더니 우리의 은어로 밥한상이 100만원인데 그러한 사건을 부탁하는 경우 통상 5상정도 차려주어야 하니 준비할 수가 있느냐고 하며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 이번 일만은 틀림이 없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5상을 차려주겠는데 지난번에 일도 하지 않고 이미 100만원이 김길장에게 건너간 것이 있으니 그것을 제하고 400만원을 주면 결국 500만원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더니 알았다고 하여 돈을 준비하여 갖다줄려고 하다가 지난 번에 준 100만원도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거를 남겨놓기 위하여 신찬석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준비되었는데 시간이 없어 못가니 온라인 통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신찬석이는 우체국 온라인 계좌를 불러주어 그날 오후 2시반 경 혹석동 우체국에서 200만원을 입금시켜 주고 나서 다시 전화를 하여 지금 200만원을 보냈는데 나머지는 결과를 보고 더 주겠다고 하자 신찬석이는 400만원이 입금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12. 5. 삼성동 우체국에서 나머지 200만원을 더 넣어주게 된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전해준 돈 100만원과 송금한 400만 원 모두 김형영실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았는가요.

답 : 물론입니다. 그러나 김형영이가 그 돈을 모두 받아 중간에 전달한 신찬석에게 얼마간의 용돈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 : 이인환은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인가요.

답 : 신찬석이가 하는 말이 이인환이도 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김형영이와 함께 일하다가 김형영이가 구속되었다가 복직되면서 그 사건과 관련하여 회생타로 그만둔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알고 있으며 항상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돈거래는 전부 신찬석이와 하였습니다.

문 : 90. 12. 10. 법원에 나가서 감정을 보낼 것을 만들었는가요.

답 : 12. 9. 신찬석에게 가서 내일 나갈 수 있느냐고 하였더니 시필(감정물을 만드는 작업) 연습을 해야

하는데 아직 연습을 못하였으니 한번 연기를 하자고 하여 12. 10. 저 혼자 재판장실로 찾아가 아직 준비가 안되었으니 한번 기일을 변경해달고 하자 재판장은 변호사에게 차후 기일을 지정해주겠다고 하여 나왔고 9차 공판이 12. 20.에 있었는데 시필을 하지 않은 판례로 공판도 연기되어 시필일자는 91. 1. 7.로 잡혀졌고 1. 31.로 10차 공판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문 : 그러면 1. 7.에는 시필을 하였는가요.

답 : 그날 시필을 하기 위하여 법원앞 정곡빌딩 동관 진다방에서 신찬석과 이인환을 만나 시필을 하려가자고 하였더니 구체적인 시필방법을 물어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주었는데 지금와서 그것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다시 시필방법을 설명하였더니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소 틀리니까 연습을 더해야겠다며 다음 기일로 한번 더 연기를 하자고 하여 제가 법원이 당신들 생각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여 일어나서 화를 내며 그럴려면 모두 때려치우자고 하면서 저 혼자 법원에 다녀올 테니 기다리라고 하며 나가 변호사에게 그러한 사정이야기를 하면서 시필자들이 속을 썩히 못해먹겠다고 하면서 취소를 해달라고 하였더니 10분 후에 다시 연락을 하고 재판장실로 들어가보라고 하여 10분후에 전화를 다시 하였더니 변호사가 취소가 되었으니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란다방에 가서 그들에게 모두 취소하고 끝내버렸는데 내가 약속이 있어 나중에 사무실로 찾아갈 테니 그때 만나자고 하고 헤어져 12. 10.에 신찬석의 사무실에 돈을 받기 위하여 찾아갔더니 이인환이가 하는 말이 어제 신찬석이가 중풍으로 쓰러져 경희의료원 응급실에 있는데 인사불성이라고 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후 가끔 사무실로 건강상태를 알아보기만 하고 신찬석이는 만나지 못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문 : 그러면 그후 피고인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요.

답 : 결국 91. 7. 3. 선고가 되었는데 정역 8월의 징역 등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여 1992. 1. 29.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집행유예를 받은 이유는 항소심에서 고소인에게 피해금을 전액이상 변제하였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구체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시필감정을(김형영의 판별시험) 하기로 하였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답 : 판사가 당일 시필할 문서의 내용을 3명에게 모두 접쳐지 않는 백지에 쓰도록 한후 원본과 필암에 의해 나온 필흔이 있는 면의 종이를 수거하여 재판장이 3장 모두에 비표시를 하고 난후 원본을 3매를 모두 복사하여 복사한것을 또 3사람에게 돌려주어 다시 접쳐진 백지에 복사한 그대로 따라서 쓰도록 하여 비표시가 된 필흔과 비표시가 안된 사본의 필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가려내도록 하는 방법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문 : 참고적으로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고소인 주장의 피해금도 전액변제하게 되었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제가 다소 잘못이 있더라고 선처를 바라며 신찬석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김형영은 처벌을 바랍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하다.

진술자 梁 承 鎬

1992. 2. 16.

서 울 지 방 검 찰 청

검 사 권 영 석

검찰주사(보) 안 경 환

■자료 마-1-25 (공판기록 3004~3024) 증제27의 23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卷之三

점	등	서	(1)
01# 8 23110.14(8822)은	8717.1314, 2138(영광)	호	199 0 년 3 월 28 일
의뢰한사법:	대전지방법원		
1. 증거물:	증거 및 연금증서(연금수령증) 1부.		
2. 증명사실:	2. 1. 증거증명의 연금수령증서는 증명 및 사증의 것인가 (그중 연승 증명, 민족적 증명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3. 증명법정:	3. 1. 증명사실: 3. 1. 증명증명의 증명 및 사증의 것인가 (그중 연승 증명, 민족적 증명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언 입비 구설과 배자(配字)의 형태, 글씨(墨迹), 음성(靈蹟)에 의한 증명 (靈蹟)로서 조형미, 윤획(運划)을 살피고 기밀(起密)부분과 증명(證明)처리부분, 채신처(裁薪處)하고 국선처(國審處)를 살펴 증명부 미숙한 차이, 차운(구급)의 특성, 개별의 특성, 관찰상 상 등을 주의하사 하였으며, 적의 신증증명, 국선증명증에 의한 증			
4. 부상의 관찰사항에 의한 증명			

서기 1946년 6월 1일
부산: 한국
한국: 한국

This image shows a single page from a handwritten document. The page contains several lines of dense, cursive handwriting in black ink. On the left side, there is a large, roughly drawn diagram of a human head facing right. Inside the head, there are some internal structures and labels. Several arrows point from the text on the page to specific parts of the head diagram, such as the eyes, nose, and mouth. The handwriting is somewhat faded and appears to be in a single continuous script.

상기 축탁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의 기
연금국민적성지정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본래도 신체적상태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학 전집 제32집

문서의
종류

위 문서의 저명 또는
~~~~~이나 그 외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중축학식에 주제별 편집 부문 확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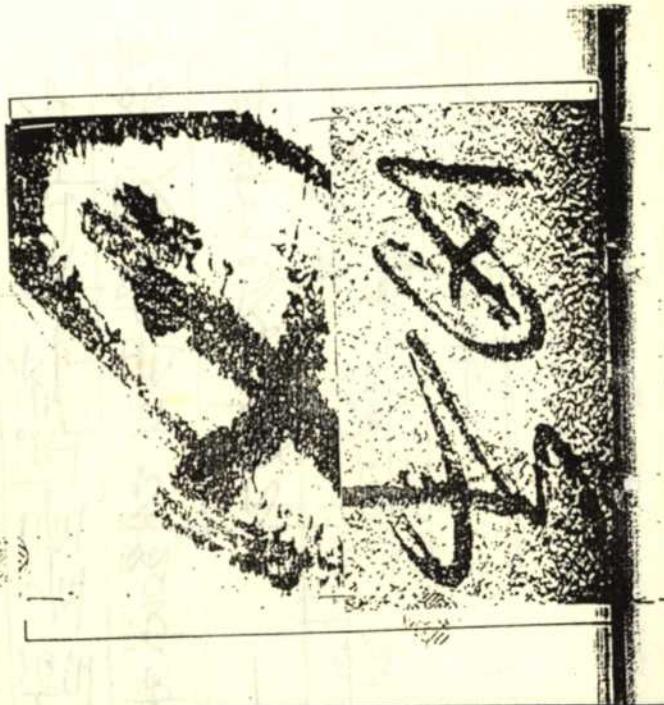
이정숙박석 이재원 박학 우현 육대수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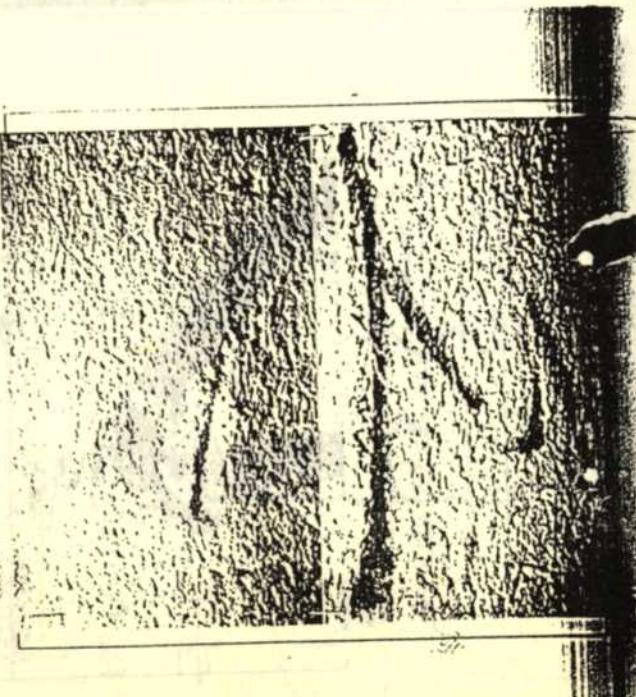


조방구경의 연동족식의 서양 이도 우편 번역본

조방구경의 연동족식의 서양 이도 우편 번역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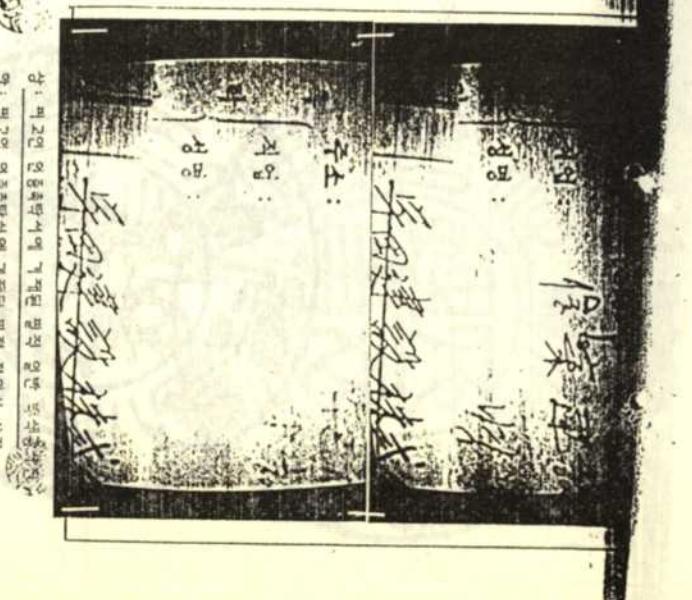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상: 연동족식의 죽약연성령 “조”주부른연역본  
하: 연동족식의 죽약연성령 “조”주부른우편 번역본  
기재내의 내용 이크로 조를해주시는 것처럼  
(+) 이크로 조를해주시는 것처럼 (+) 우편  
지상하는 주체되어 였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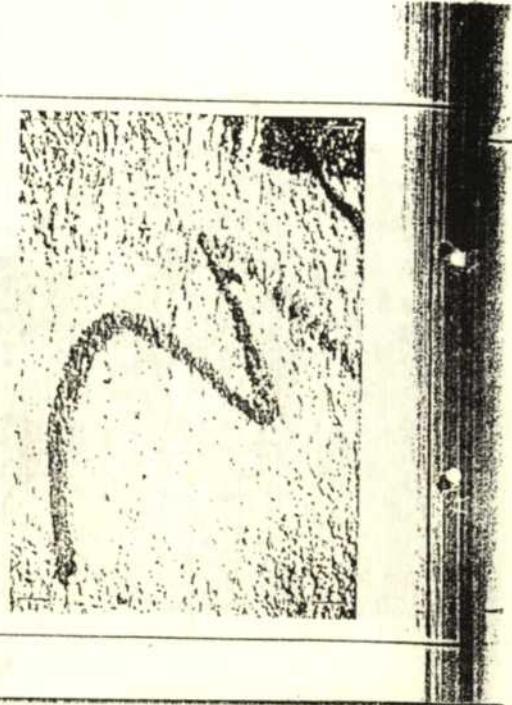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동족식의 죽약연성령 “조”주부른연역본  
기재내의 내용 이크로 조를해주시는 것처럼  
우편

상: 미 고인 연동족식에 적재된 일련 우편  
하: 미 고인 연동족식에 적재된 일련 우편

(+) 이크로 조를해주시는 것처럼 (+) 우편  
지상하는 주체되어 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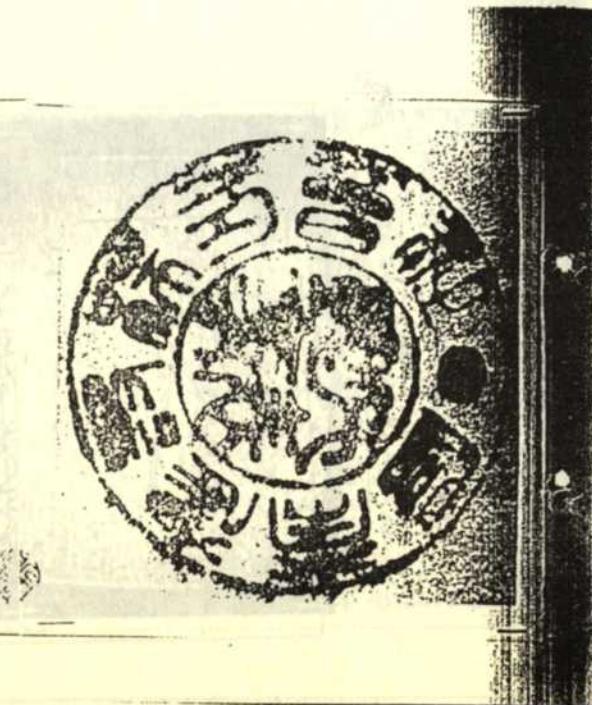


연동족식의 죽약연성령 “조”주부른연역본  
기재내의 내용 이크로 조를해주시는 것처럼  
우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류번호:

2018. 5. 27  
1992

한국과학기술원은 1951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1952년 1월 1일 국립과학원으로 개칭되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1951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1952년 1월 1일 국립과학원으로 개칭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은 1951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1952년 1월 1일 국립과학원으로 개칭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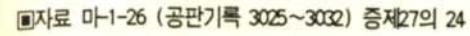
한국과학기술원은 1951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1952년 1월 1일 국립과학원으로 개칭되었다.





별자리 날연문·신양연설주간교수·2019-9-25  
연영 북대석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사

국립과학기술원  
이화학과  
윤서경  
장설

二二

10 월 10 일 목요일  
10 월 11 일 금요일  
10 월 12 일 토요일  
10 월 13 일 일요일

국립과학주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312 자료 마-1-26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4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  
인원조정, 직제개정안  
마-1-26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  
인원조정, 직제개정안  
마-1-26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00 YONGBONG-DONG, KWANGJU, KOREA

[자료 마-1-27 (공판기록 3033~3040) 증제27의 25]

## 2. 직제 조정안

## 문서분석실 인원조정 및 직제개정안

## 1. 신청개요

## 가. 문서분석 1, 2실 업무분장 부활

1987. 9. 이전에는 문서 1, 2실로 분류되어 문서 1실은 필적, 인영 등의 감정과 문서 2실은 필기구 색소, 문서 작성년도, 위, 변조문서 감정, 레이저를 이용한 인영감정연구를 분리하여 취급하던 중 1987. 9월 직제개편시 문서 2실을 폐지한 바 있음.

## 나. 감정업무의 증가

| 년도   | 필적    | 인영  | 기타  | 계     | 증감   | 비고    |
|------|-------|-----|-----|-------|------|-------|
| 1980 | 367   | 145 | 27  | 539   | 100% | 3인 감정 |
| 1981 | 416   | 132 | 27  | 539   | 106  |       |
| 1982 | 387   | 166 | 273 | 826   | 153  |       |
| 1983 | 424   | 156 | 287 | 867   | 161  |       |
| 1984 | 583   | 207 | 188 | 978   | 181  |       |
| 1985 | 588   | 225 | 326 | 1,139 | 211  |       |
| 1986 | 648   | 229 | 243 | 1,120 | 208  |       |
| 1987 | 777   | 538 | 306 | 1,621 | 301  |       |
| 1988 | 2,499 | 515 | 220 | 3,234 | 600  | 4인 감정 |
| 1989 | 2,071 | 489 | 204 | 2,764 | 513  |       |
| 1990 | 2,815 | 503 | 311 | 3,629 | 720% |       |

위의 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1980년 539건(1인년 179.7건)에 비하여 1990년에는 3,629건(1인년 907.3건)으로 약 720% 업무가 증가된 실정이나, 감정인원은 1명 증가뿐이어서 감정실무에 급급할 뿐, 전문분야의 연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다. 문서감정의 특수성

문서에 관한 범죄는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 문서감정은 어느 분야와 다르게 상당기간 동안 연구와 경험을 쌓은 후에야 실무감정이 가능하게 되는 특수성때문에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면, 최소한 3-4년이 소요되므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물론 앞으로 증가될 업무에 대비하여야 함.

## 가. 1987년 당시

| 직급           | 문서 1실 | 문서 2실 | 계 | 비고 |
|--------------|-------|-------|---|----|
| 문서감정관 별정 5급  | 1     | 1     | 2 |    |
| 문서감정담당 별정 6급 | 1     |       | 1 |    |
| 문서감정담당 별정 7급 | 1     |       | 1 |    |
| 물리기사보        |       | 1     | 1 |    |
| 화공기원         | 1     |       | 1 |    |

## 나. 1991년 현재

문서 2실의 폐지로 문서 2실 문서감정관(별정 5급)은 일반물리실로, 물리기사보(현 공업연구사)는 특수물리실로 보임되었으며, 문서감정 담당(별정 6급, 7급)은 1981년 임용되어 10여년간 동일직급에 머물고 있어서 과중한 업무에 극도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임.

## 다. 조정 건의안(문서 2실의 부활과 감정인원 증언)

| 직급            | 문서 1실 | 문서 2실 | 계 | 증감 | 비고 |
|---------------|-------|-------|---|----|----|
| 문서감정관 별정 5급   | 1     | 1     | 2 | 0  |    |
| 문서감정담당 별정 6급  | 2     | 2     | 4 | 3  |    |
| 문서감정담당 별정 7급  | 1     | 1     | 2 | 1  |    |
| 화공기사 또는 공업연구사 | 1     | 1     | 2 | 1  |    |
| 기능직           | 1     | 1     | 2 | 2  |    |

## 라. 업무의 분장

문서 1실 : 필적 인영 등의 형태학적 비교연구 및 감정.

문서 2실 : 필기구 색소, 인쇄, 타자문자, 작성년도 등의 연구 및 감정.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형태학적 비교감정기법과 외국에서 광범하게 연구중인 컴퓨터를 이용한 필적의 개인식별에 관하여 새로운 감정기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3. 직제조정 후 기타 효과

## 가. 업무처리의 신속화

과중한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건을

사안별로 분류하여 처리를 하므로 업무처리 기간의 단축 효과.

#### 나. 업무의 전문화

현재 감정인 모두가 공통적인 업무를 복합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직제조정 후 전문분야별로 업무를 개편하는 개인 업무의 분장으로 감정처리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음.

#### 다. 새로운 감정기법의 연구개발

각 업무의 전문적인 분야별로 연구활동을 충분히 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각종 사건에 신속히 대처함은 물론, 일선 수사기관 중대사건에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초동수사에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 문서감정실은 1982년 문서감정과로 직제개정안이 마련되어 당시에 대통령의 결재까지 얻은 바 있으나, 현재까지 시행이 보류되어 왔음.

#### \* 문서감정업무흐름도 \*

1. 서무계 접수.

2. 문서분석실 접수.

3. 문서분석실장 결재(과장 위임을 받아 실장이 사건 배당)

4. 물리분석 과장 전결

5. 배당된 사건은 지정된 담당자가 착수함.  
(단 : 시국사건 등 사회적인 관심사건은 감정인 전원이 감정을 착수한 경우도 있음).

6. 필적감정인 경우 : 현미경(일산), 입체현미경(일산), 고정밀비교학대투영기(독일산) 등을 사용함.

가. 예비검사 : 예비검사는 본 검사를 위하여 개괄적으로 관찰하며, 감정서 상에는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감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재하여도 무방함).

1)감정자료와 대조자료의 특성.

2)필기구와 용지 상태.

3)감정자료와 대조자료의 작성시기 경과 정도.

4)필체 또는 필법 등의 일관성 여부

5)배자의 조화성 여부.

6)필세 유무 등.

#### 나. 본검사

1)자서의 구성 및 형태.

2)필순과 배자.

3)필암과 필세.

4)오자(誤字)와 오용(誤用) 여부.

5)문자의 분해 식별.

6)개개인의 회소성 있는 독특한 특징 분류.

7. 예비검사와 본검사에서 분석된 특징부분을 분류하여 사진 촬영.

8. 인영의 경우 : 현미경, 고정밀비교학대투영기, 확대 투영기, 계측루배 등을 사용함.

가. 예비검사 : 예비검사는 필적과 마찬가지로 본검사를 위하여 개괄적으로 관찰하여, 감정서 상에는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록하여도 무방함.

1)인주의 부착량과 용지 상태.

2)인주의 유성분 함유량 및 성분에 따른 영향.

3)날인암 및 날인대의 영향.

4)특수 인영 여부(고무인, 철인 등).

5)전사 인영 또는 동판 및 모조인영 여부.

6)모각 인영 여부.

#### 나. 본 검사

1)현미경 관찰 검사.

2)비교학대현미경 검사.

3)학대투영기 검사.

9. 예비검사와 본검사에서 분석된 인영을 사전 촬영과 슈퍼임프스 제작을 의뢰.

10. 프린트된 사진을 계측 및 특징 분석하고 슈퍼임프스(동일조건에서 촬영하여 동 배율로 제작된 필름(약 90배 확대)로 중첩 시험함. 단, 인영감정에 있어서 동일한 인영이라도 날인조건에 따라 차이점이 다수 현출되는 것이 인영의 특징임을 유의하여야 함.)

11. 지정된 담당자는 필적과 인영의 종합 판단한 후

이 내용을 나머지 감정인들과 세미나를 하여 각자 의견을 종합 결론을 정함.

12. 세미나를 가진 후 프린트된 사진을 보고 특징을 표기.

13. 지정된 담당자는 감정서 작성 후 각자 심의에 대한 확인 서명.

14. 완성된 감정서를 실장한테 결재.

15. 과장 결재.

16. 부장 결재(91. 9. 16자 이전에는 소장 결재를 두하였으나, 직제개편으로 현재는 부장 결재). 단, 언론에 보도된 사건은 소장 결재.

17. 발송.

#### 피의자 신문조서

(제 1 회)

성명 김형영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2. 2. 16.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김우경은 검찰조사(보) 전연규를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문하다.

문 : 피의자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본적, 주거를 말하시오

답 : 성명은 김형영(金炯永), 호주는 김형영, 연령은 52세, 생년월일 1939. 11. 19. 생, 직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 문서분석관, 직장 전화번호는 본적은 서울, 주거는 서울.

자택전화번호는입니다.

검사는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 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 피의자는 형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79. 11. 21.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허위감정 횡령 등으로 무혐의를 받았고, 80. 3. 18.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허위감정으로 무혐의 처분, 80. 3. 26. 서울 서대문구 경찰서에서 허위감정으로 입건되어 80. 7. 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82. 2. 23. 대법원에서 무죄확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85. 8. 31.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무혐의 처분, 89. 6. 27.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감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 합성수지 인영 제조과정과 복제된 인영의 특징

##### 0. 합성수지 인영 제조과정

1)기히 날인된 인영 또는 지문에 사진촬영을 한 후 네가필름을 수지기계를 이용해 합성수지판 위에 올려 놓고, 광선을 조사하여 인화한다.

2)이 과정을 거치면 수지판에 원본과 똑같은 음, 양 각이 생기고, 이 수지판을 물에 넣어 경화하면 복제된 인영 또는 지문이 생긴다.

##### 0. 복제된 인영의 특징

현미경으로 확대 200배 관찰해보면 윤곽선 등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인영의 재질이 수지이므로 인주의 흡착력이 약하므로 날인된 인영의 희선이 인주가 충분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인영 또는 지문에 인쇄문양이나 글자가 중첩되어 있을 경우 정밀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부분을 정교하게 수정이 곤란하다. 수정을 하게 되면 미세한 인획선이나 인주의 융선에서 손상이 오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있습니다.

문 : 피의자의 학력, 경력, 재산상태 병역관계 등을 진술하시오.

답 : 저의 학력으로는 1971. 2. 9. 인천시 산곡동에 있는 선린상업전수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저의 경력으로는 1974. 국가기능검정인장공에 1급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1975. 4. 15. 저서 인각교감을 출간하였으며 1975. 경부터 현재 까지 국가 기능검정출제 및 검정위원을 역임하면서 1977. 6.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문서감정실에 근무하다가 현재는 위 국과수 문서감정관(별정 5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재산상태로는 32평짜리 아파트 1채(식가 1억 7천만원)의 부동산이 있으며, 동산으로는 약 1천만원 정도가 되며, 병역관계로는 1972. 1. 1. 방위병에 편입되어 병역을 필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의 가족관계는 어떠한가요.

답 : 저의 가족관계로는 모 서봉순(77세, 무직), 처 신귀분(46세, 무직), 자 김홍규(17세, 고3), 자 김의규(16세, 고1), 자 김지혜(12세, 국교 6년) 등과 위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정당이나 기타 사회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전몰유가족이나 원호대상자인가요.

답 : 아닙니다.

문 : 피의자는 국가로부터 훈장이나 표상들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문 : 피의자의 건강은 어떠한가요.

답 :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문 : 피의자의 종교는 무엇인가요.

답 : 1965.부터 기독교를 신봉하고 있으며 현재는 성광성결교회 장로를 봉직하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술이나 담배를 하는가요.

답 : 담배는 피우지 않고 술은 2홉들이 반병 정도를 마십니다.

문 : 피의자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지요.

답 :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 :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근무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시오.

답 : 1977. 3. 위 국과수에서 문서감정인 모집공고(서울신문)가 나서 이에 응시하여 본인과 이인환 양후열 3명이 합격하여 일사동기로서 근무하다가 이인환은 허위감정 등의 문제로 1981. 1. 1. 직권면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양후열은 지금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이인환 등과 함께 신찬석의 추천을 받아 위 국과수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답 :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77. 3. 서울신문에서 문서감정인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인환 등과 같이 응시하여 응시자 63명중 저와 이인환, 양후일 등 3명이 합격하여 같이 일사동기가 된 것이지 신찬석의 추천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찬석은 나이때문에 시험을 볼 수가 없어 저에게 시험을 보라고 권유한 적은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이인환의 피의자신문조서 정을 피의자에게 보여주며

문 : 이인환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와는 시험응시 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신찬석이가 이인환에게 김형영과 함께 국과수에 추천을 하여 주었으니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틀림없이 합격한다고 말을 해주어 피의자와 함께 위 국과수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 신찬석이 본인에게 시험을 보라고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틀림없다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 : 피의자의 전과 중 82. 2. 23. 대법원에서 허위감정으로 무죄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어떤 내용의 사건인가요.

답 : 먼저 선고 결과부터 알려드리면 저는 80. 3. 28. 서대문경찰서에서 허위감정으로 입견되어 80. 7. 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정역 10월을 선고받아 상고하여 82. 2. 23.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해직되었다가 다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내용은 제가 그 당시 어떤 사람의 땅이 38필지로 나눠서 각 38명에게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팔았는데 그중에서 2개의 매도증서를 가지고 와 그곳에 적힌 매도인의 인장이 같은 인장인지의 여부를 감정하는 일을 맡았는

데 같은 인장이라고 제가 감정결과를 내자 그것에 불복한 사람이 사실은 다른 인장인데 같은 인장으로 감정하였다고 진정을 하여 그것으로 구속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인환이가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당시 땅을 팔았던 사람의 매도증서 9통에 대한 인장의 진위 여부를 감정해 달라는 통보를 보내 국과수의 이인환이가 매도증서에 날인된 인장이 모두 동일인장이라고 감정결과를 내어 통보를 하여 제가 무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문 :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위치, 직원의 규모, 감정의 절차 등에 대해 아는 대로 진술하시오.

답 : 국과수의 위치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331-1에 있으며 위 국과수의 문서분석실 직원 현황은 분석실장으로 본인(별정직 5급)이 있고, 양후열(별정 6급), 최설(별정 7급), 진명수(화공기원보), 이영수(사무보조원), 이영미(타자수)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절차로는 국과수의 감정의뢰기관은 경찰검찰 형사지방법원이며 개인감정 등은 하지 않고 있으며 위 감정의뢰 공문이 서무계에 접수되면 이를 분류하여 저의 문서분석실로 이송이 되면 문서분석실장인 본인이 사건배당(감정의뢰)을 하며 이때 중요하다고 인정되면 본인이 직접 본인에게 배당을 하여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감정업무는 감정인 4명이 전문직종만 한정적으로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필적 인영 변조 말소 등 모든 업무를 꼴고루 다합니다.

그리고 감정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정된 수감정인이 감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각자 심의케 한 다음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감정서 상단에 공동심의 필연에 각각 서명날인토록 되어 있으며 이때 다른 의견이 있으면 재검토제트의 등을 거치고 며칠동안 더 연구토록 되어있으나 현재까지는 위와같이 재검토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이세용이라는 사람을 아는가요.

답 : 예. 알고 있습니다.

문 : 이세용을 알게 된 경위를 진술하시오.

답 : 89. 5. 말 20:00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유진상가 2층 생맥주집에서 이인환으로부터 200만원을 건네받은 후 며칠 있다가 이인환이 19:00경 프라자호텔로비라운지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서 나가보았더

니 이인환외에 다른 한사람이 나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세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 : 그렇다면 피의자는 전에 검찰청에 출두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세용을 알지도 못하고 본적도 없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국과수 사건이 신문지상에 대대적으로 신문에 보도되어서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에서 저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는 처음 이세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목적으로 나갔는가요.

답 : 사실 89. 5. 말경에 이인환으로부터 이세용의 이름을 듣고 애로사항이 있어 부탁을 하려고 하니 나와달라고 하여서 돈을 받기로 하였고 하여서 이세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문 : 그렇다면 피의자는 이세용으로부터 위 200만 원 외에 금전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 경위를 진술하시오.

답 : 제가 이세용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89. 8. 15. 18:00 경 프라자호텔 로비라운지에서 이세용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자리에서 이세용이 조병길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를 한 사실이 있는데 조병길이 이송 운이란 사설감정인에게 인증촉탁서에 조병길 성명 3자 필적과 조병길 시필 필적과의 이동여부 등에 대하여 이송운의 감정서를 저에게 보이며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여서 제가 이를 보고서 제가 '이 것은 엉터리감정서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이세용이 위 사건으로 법원에서 감정의뢰가 오면 잘 부탁한다고 하는 등 이야기를 나누고 프라자호텔 중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저에게 '용돈을 보내드릴 테니 온라인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서 저는 저의 처신귀분의 국민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었더니 그해 8. 17. 이세용이 위 통장으로 200만원을 보내와 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래서 법원에서 피의자가 근무하는 국과수로 위 건으로 감정의뢰가 있는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문 : 그래서 어떻게 하였는가요.

답 : 인증처탁서의 서명 조병길과 시필은 상호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모방복제한 필적이라고 감정되어 있고 또 양순화 필적과 당좌수표에 기재된 필적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상호동일한 필적으로 엉터리 감정이 되어 있어서(이송운의 감정을 말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종호는 사건심리상 필적감정을 하기 위하여 90. 2. 8 국과수로 감정인 추천의회가 와서 본인이 추천되어 90. 3. 26 대전지방법원에 출두하여 감정인 선서를 한후 증거물인 각서 및 인증처탁서와 피고인 조병길 제출 대표이사 연혁으로써 필적의 이동여부 및 전사 모방여부와 대표이사 직인 이동여부로써 이의 감정회보는 90. 4. 12 자로 대전 지방법원에 감정회보 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감정결과 각서 및 인증처탁서의 조병길 서명부분을 제외한 모든 필적은 공통점이 있고 조병길의 서명은 전사되지 아니하고 필기도구로 기재되었고 모방한 흔적은 관찰되지 아니한 자연스럽게 기재한 필적으로 감정회보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검사는 피의자의 처인 신귀분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036-21-0251-741)중 이세용으로부터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곧 위 통장에 대한 사본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위뢰하여 그 사본을 전달받은 사본을 피의자에게 제시하며

문 : 89. 8. 19. 피의자의 처인 신귀분에게 이세용이 보낸 2백만원이 피의자가 8. 15. 알려준 통장과 같지요.

답 : 예. 제가 8. 15. 알려준 제 집사람의 통장으로 이세용으로부터 2백만원을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8. 19.경 이세용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2백만원을 보냈다고 하여서 확인해보니 2백만원이 약속대로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 돈 2백만원을 어떻게 하였는가요.

답 : 확실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돈이 들어온 8. 19. 국민은행 홍제동 지점에서 50만원권 자기앞 수표로 발행하여 1장을 제가 이서를 하고 사용하였고 나머지 1매 50만원은 저의 통장에 입금시킨 것으로 기억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위 대전지법에 회보한 공문서 사본을 제출할테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검사는 피의자가 제출하는 문서감정회보(89고단 1314, 2134 대전지법)서 사본을 제출받아 조서 다음에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토록 하고 위 무통장입금표사본을 조서말미에 편철하다.

문 : 피의자가 감정해준 결과 위 고소사건은 어떻게 되었는가요?

답 : 조병길이가 1년 6월의 유죄선고를 받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결의 무효의 소도 이세용이가 승소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그후 피의자는 이세용으로부터 다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 위와같이 조병길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무효의 소도 이세용이가 승소하여 고맙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여 90. 4. 하순 19:00경 프라자호텔 지하 양과점에서 이세용으로부터 1만원권 100매 즉 100만원과 수표로 100만원 도합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검사는 이세용의 피의자신문조서 정을 피의자에게 보여주며

문 : 이세용의 진술에 의하면 프라자호텔 중식당에서 피의자에게 돈 200만원을 주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가요.

답 :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하 양과점에서 만나서 프라자호텔 중식당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돈 200만원을 받은 것이 정확합니다.

문 : 피의자는 그외에 문서감정관계로 이인환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 경위에 대해 진술하시오.

답 : 89. 5. 말경 20:00 홍은동에 있는 유진상가 2층에서 이인환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후 며칠 있다가 89. 5. 말경 이인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저녁 7시에 이인환 본인 이세용 셋이서 프라자호텔 로비라운지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이세용이 저에게 이익주가 감정한 감정서를 내 보이길래 이를 읽어보니 엉터리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런 엉터리 같은 놈이 어디 있느냐' 다음에 문제가 되더라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셋이서 그 옆에 있던 일식집 송원에서 저녁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문 : 피의자가 이세용 이인환과 함께 만나기 전에 이인환으로부터 돈 200만원을 받았을 때 이인환이 무슨 명목이라고 하던가요.

답 : 이세용이라는 사람이 조병길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한 법원으로부터의 감정의뢰가 오면 잘 부탁한다고 하여서 돈을 받았던 것입니다.

문 : 그후 돈 200만원을 받은 후 이세용 이인환 피의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세용이가 그 사건이야기를 하던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피의자는 이익주가 감정한 감정이 엉터리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이익주의 감정에 의하면 공정증서에 기재된 필적과 이세용명의의 각서, 조병길명의의 각서에 각각 기재된 필적은 조병길의 서명필적을 제외하고 모두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위의 모든 문서에 기재된 필적과 이세용 조병길의 서명필적과는 상이하다는 감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엉터리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문 : 그래서 피의자는 위 건에 대한 감정회보를 하여 주었나요.

답 : 예.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90. 4. 12 대전지방법원으로 감정회보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제출한 감정회보(89고단 877, 1314, 2134 대전지법)와 같습니다. 그래서 조병길은 유죄판결을 받고 이세용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결의 무효의 소에서 승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문 : 그렇다면 피의자는 이익주 이송운의 감정이 허위로 되어 있어서 피의자가 이를 바로잡아 정확하게 감정회보를 하여 주었던 말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그런 것이 아니고 이익주 이송운의 감정이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이세용에게서 건너간 돈 600만원 때문에 이세용에게 유리하도록 허위감정을 한 것이 아닌가요.

답 : 제가 공무원으로서 허위감정의 댓가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어주십시오.

문 : 그외에 피의자는 이인환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 경위를 자세히 진술하시오.

답 : 양승호건으로 3차례에 걸쳐서 감정을 절해달라는 명목으로 이인환으로부터 350만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첫번쩨는 90. 9. 초순 20:00경 서대문구 홍은동 유진상가 부근 호프집에서 이인환을 만나서 70만원을 건네받으며 양승호의 형사1심 사실조회전에 대하여 회신을 잘해달라는 명목으로 받았으며, 두번쩨는 90. 12. 4. 20:00경 위 호프집에서 양승호가 강태호 명의의 보관증 내용을 변조한 부분에 대한 법원의 재감정요청이 있을 때 잘해달라는 명목으로 돈 140만원을 주어받은 사실이 있으며, 세번쩨는 불안하였는지 12. 6. 20:00경 위 호프집에서 다시 위와같은 요청을 하며 140만원을 주어서 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서울신탁은행 신월출장소에 자유자축예금통장(계좌번호 1에 89. 12. 9. 997,000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사실이지요.

답 : 예. 사실입니다.

문 : 위 997,000원에 대한 입금내역을 당첨 직원이 확인한 결과 위 돈 중 20만원이 전주시 금암2동 1577-21에 사는 강태호로부터 입금되어 있는데 위 강태호는 양승호 감정전의 반대편인데 어떻게 하여 그 사람에게도 돈을 받게 되었는가요.

답 :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태호에게 2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문 : 피의자는 소송당사자인 양승호 강태호 등 양쪽에게 모두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 : 그외에 피의자는 이귀덕이라는 여자로부터 감정관계비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이귀덕건으로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돈을 실제로 이인환에게 받았습니다.

문 : 그렇다면 그 경위를 진술하시오.

답 : 90. 7. 말경 20:00 홍은동 호프집에서 이인환을

320 자료 마-1-28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자리에서 이귀덕이라는 여자가 남편 조종섭사망 후 그 유서와 진술서 서면의 필적이 동여부를 감정해 달라고 하는데 이귀덕에게 유리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30만원을 전달하여 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래서 그대로 감정을 하였는가요.

답 : 아닙니다. 위 이귀덕이 남편사망 후 재산관계로 시끄럽게 되자 시동생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면서 조종섭의 유서와 다른 진술서 서면의 필적이동 여부를 감정으로 하였으나 90. 8. 10.경 위 글씨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른 수도 있다고 하여서 나중에 들어보니 이귀덕이가 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 회보에 대한 공문서를 사본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이때 검사는 피의자가 제출하는 문서감정회보(이귀덕 감정의뢰건에 대한 회보)사본을 제출받아 조서다음에 수사보고서를 작성, 첨부토록 하다.

문 : 그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신찬석으로부터 온라인으로 35만원을 건네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 경위를 진술하시오.

답 : 위 이귀덕감정건에 대하여 양필적의 이동여부 판계로 전주동기소로 출장내려가기 전에 신찬석이가 위 건에 대하여 잘좀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저의 서울 신탄은행 신월동 출장소(제좌번호

로 90. 6. 1. 온라인 입금시켜 주어 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신찬석이가 김형영에게 90. 8. 1. 온라인 통장으로 35만원을 보낸 무통장 입금확인증을 피의자에게 보여주며

문 : 위 통장에서 처음 신찬석이가 피의자에게 보낸 35만원이 위 이귀덕건과 관련된 그 돈이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이때 검사는 위 무통장입금확인증 사본을 조서밀미에 편철하다.

문 : 피의자는 한국문서감정원장인 이송운으로부터 김승환의 감정건으로 돈 200만원을 89. 5. 말경 일식당횟집에서 받은 사실이 있지요.

이때 검사는 기록 정에 첨부되어 있는 이송운의 진

술서를 피의자에게 보여주자

답 : 다른 것은 다 맞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89. 5. 말경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일식당횟집에서 이송운이와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절대 이송운으로부터 김승환의 감정건에 대하여 돈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다른 것은 다 인정하면서 유독 이송운에 대한 것은 부인을 하는가요.

답 :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인환은 솔직한 사람이라 속이지 않아 그 사람의 돈을 받았으나 이송운은 식사 대접은 할지 몰라도 돈을 줄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아비할 정도입니다.

문 : 그렇다면 89. 8. 하순경 이송운은 이세용에 대한 공갈사건의 감정건으로 피의자에게 주라고 하며 이인환에게 500만원을 주었다고 하는데 피의자는 이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500만원이라면 거액인데 제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리 없습니다. 그것도 포함입니다.

문 : 위의 액수가 500만원의 거액이면 허위감정을 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 이송운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돈을 내놓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송운 혼자서 소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은 제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문 : 피의자는 본건 사건에 대하여 유리한 증거나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다른 것은 틀림이 없으나 이송운으로부터 200만원, 5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모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공공기관으로부터 문서감정을 하여 주는 문서분석실장으로서 돈을 받고 문서를 감정해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여년을 공직에 있었던 점을 참조하시어 제가 재기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 한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진술자 김 형 영

1992. 2. 16.

서 울 지 방 검 찰 청

검 사 김 우 경

검사주사(보) 전 연 규

자료 마-1-29 (공판기록 3060~3068) 증제27의 27

## 피의자 신문조서

(제 2 회)

성 명 김 형 영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92. 2. 17. 서울지방검찰청 1027호실에서 검사 김우경은 검찰주사 전연규를 참여하게 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린 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 피의자가 김형영이고 전희의 진술은 사실과 틀림이 없나요.

답 : 예. 제가 김형영이고 전희까지의 진술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문 : 전희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는 문서감정등과 관련하여 이세용, 이인환, 강태호, 신찬석 등으로부터 금전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문 : 그렇다면 위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받은 내역을 간단히 진술하시오.

답 : 이세용으로부터 받은 돈은 89. 8. 19. 저 신귀분통장으로 200만원을 받았고, 90. 4. 하순 19:00경 프라자호텔 중식당에서 200만원으로 2회에 걸쳐서 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인환으로부터는 89. 5. 말 20: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유진상가 2층 생맥주집에서 200만원을 받았고, 90. 9. 초순 20:00

경 위 유진상가내 생맥주집에서 70만원을 받았고, 90. 12. 4. 20:00경 위 생맥주집에서 140만원을, 90. 12. 6. 17:00경 위 생맥주집에서 140만원을 받는 등 하였고, 90. 8. 초순 20:00경 위 생맥주집에서 30만원을 받는 등 5회에 걸쳐서 58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신찬석으로부터는 90. 8. 1. 35만원을 온라인통장으로 받았으며, 강태호로부터는 89. 11. 3. 양승호가 강태호 명의의 보관증 내용을 가필, 위조여부에 대한 감정회보를 89. 11. 3. 하여 주었는데 동년 12. 초순 15:00 강태호가 저의 국과수로 찾아와 감사의 표시로 금 20만원을 주어 받은 사실이 있는 등 4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서 총 1045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 문서의 감정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요.

답 : 크게 대별하면 필적감정, 인영감정, 위조변조감정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문 : 위와같은 문서감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하시오.

답 : 먼저 필적감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필적감정이란 현미경 입체현미경 고정밀비교확대투영기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대비검사 즉 대조자료의 특정 필기구와 용지 작성기제시기 필체의 일관성 정확성 등을 검토한 후 본검사 즉 문자구성 배자 필압 필세 오자 분해식별 개인의 회소성있는 특별한 특징 등을 분류한 후 특수·특정부분을 분류 사진촬영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인영감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현미경 고정밀비교확대투영기 계측루메 등을 사용하여 예비검사를 즉 인주의 부착상태 및 용지업날 및 날인형태 등을 검사한 후 본검사에서는 현미경검사 등을 통해 미세한 조각의 특징과 조각상태전사 동판여부 및 모각여부 등을 검사한 후 필요한 사진을 촬영사진 및 확대로 시중첩시험한 수퍼임포스를 제작 중첩시험 등을 시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외에 위조 변조문서감정법이란 이러한 문서는 적외선현미경 자외선감식기 등에 의한 관찰시험 및 입체현미경 관찰 등으로 이를 정밀분석 시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업무 및 그 절차는 어떠하며 사설감정원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 두 종류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국과수의 감정은 경찰 검찰 형사지방법원(민사지법은 제외)에서 감정의뢰를 했을 때 그 감정의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주는 것이고 개인이나 민사지법에서는 국과수에 감정의뢰를 할 수 없으며 사설감정소의 감정은 개인이나 기관에 불문하고 감정의뢰를 하면 그 결과를 공보하여 주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으며, 그 감정절차에 대해서는 국과수에서는 문서분석실장이 각 감정의뢰건을 배당을 하여 주면 주감정인이 그 감정결과서를 작성하여 문서감정인 전원에게 회람식으로 돌아가며 그 감정에 대한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해 한 다음 감정서 좌측상단에 공동심의필이라는 고무인을 찍고 각자의견이 없으면 서명날인한 후 결재를 득한 후 발송처리하며, 사설감정소에 서의 감정절차는 특별한 것이 없고 감정인 1인이 감정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발송하거나 개별적으로 찾아가도록 하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질상으로 국과수의 감정은 사설감정에 비해 거의 절대적으로 대외적 신용도가 높은 것을 그장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문 : 이번에 문제된 감정은 돈을 받고서 허위감정을 한 것이 아닌가요.

답 : 전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은 돈을 받았다고 하여서 허위감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뢰자의 의도가 명백한 점을 알 수 있고 그 의도와 사실이 부합되면 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돈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문 : 허위감정이 아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답 : 감정사항과 감정결과가 명확했기 때문에 저는 허위감정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문 : 감정내용이 불분명하고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때 돈을 받고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감정결과를 도출한다면 그것이 허위감정이 아닌가요.

답 : 그렇다면 그것은 허위감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문 : 피의자가 감정한 내용 중 양승호와 강태호사건에서 피의자는 89. 11. 3. 감정결과를 변조추정으로 하였는데 이는 어떻다는 것인가요.

답 : 변조로 본다는 뜻입니다.

문 : 90. 8. 10. 이귀덕 사건에 있어서 조종섭의 유서글씨와 다른 진술서 서면의 필적 이동여부에 대하여 피의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어떤 내용인가요.

답 : 그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결국 판결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인데 위 사건에서 이귀덕이 폐소한 점으로 보아 이를 허위감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 : 국과수 문서감정실의 다른 감정관의 허위감정 여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문건을 가지고 감정인 4명이 공동심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문 : 피의자는 전에 광일사에서 수지 동판 등을 뜯 사실이 있나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그렇다면 피의자는 왜 수지 동판을 뜯게 되었는가요.

답 : 저는 90-91 사이에 중구 인현동에 있는 광일제판소에서 수지 동판을 4차례에 걸쳐서 떠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수지 동판에 의한 인영, 무인 등의 위조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수지 동판에 의해서 나타나는 무인, 인영의 변화상태를 연구하기 위하여 수지 동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문 : 그렇다면 위 수지 동판으로 위 무인 인영상태를 연구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약 10여 차례 정도를 광일제판소 사무실에서 연구한 후 수지 동판에서 나타나는 변화상태 등을 정립하고자 하였으나 4차례 걸쳐 연구하고 끝마치고 말았습니다.

문 : 피의자는 감정증 수지 동판 등을 이용한 위조 서류 등을 적발한 경우가 있는가요.

답 : 91년도에 약 5건의 수지 동판을 이용한 위조 서류 등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 : 시중에 지문 인장 위조단이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요.

답 : 특별히 지문, 인장 위조단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나 실제로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문 : 끝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나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답 : 감정을 소신껏 한 점에 대해서는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던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 한대로 오기나 중간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진술자 김형영

1992. 2. 17.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우경

검찰주사(보) 전연규

\* 김형영 주민등록증 사본 <생략> (공판기록 3068)

자료 마-1-30 (공판기록 3069~3076) 증제27의 28

## 피의자 신문조서

(제 2 회)

성명 이인환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에 대한 뇌물공여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2. 2. 17.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손기호는 검찰주사(보) 김광수를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린 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 피의자는 이인환이며 전번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피의자는 처음에 검찰에 소환되었을 때 이세용 김형영과 함께 만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일이 있지요.

답 : 예.

문 : 이세용이나 김형영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와 함께 세명이서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죄송합니다. 사실은 세 사람이 함께 만난 사실

이 있습니다.

문 : 그것이 언제인가요.

답 : 1989. 6. 초순경으로 기억되는데 프라자호텔 커피숍에서 한번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런데도 왜 처음에는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나요.

답 : 사실은 제가 이 사건보도가 처음났을 때 엠비시뉴우스를 보니 김형영실장이 이세용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을 하길래 제가 그 사실을 먼저 말하면 그에게 누를 끼치게 될 것 같아 저는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들이 서로 만난 사실을 시인하는 이마당에 제가 그 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 : 세 사람이 만난 경위는 어떤가요.

답 : 1989. 4. 경에 이세용이 처음 저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정동교회앞 상호불상의 지하다방에서 저를 만나자고 하여 그곳에서 처음 이세용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세용이 제가 자기의 1심재판에서 감정을 해준 것을 안다고 하면서 저에게 조병길이 작성한 각서의 조병길 서명과 조병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말미용지에 서명한 용지에 서명한 필적을 서로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감정해달라고 하여 그 감정건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 이세용이 다른 감정인에게도 감정을 부탁해달라고 하여 제가 이익주에게 감정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감정을 해주었는데 저의 감정은 필적이 동일한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와 이세용에게 유리한 감정이 되었는데 이익주는 인정된 각서의 조병길의 서명필적이 주저주저한 흔적이 있어 모방하였거나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두 필적은 서로 다르다는 취지의 감정을 하여 이세용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1989. 5. 하순경 이세용이 저를 만나 불만을 터뜨리면서 감정을 부탁하였는데 그것도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저를 나무라기에 저는 입장이 난처하여 그 자리에서 이세용에게 우리나라 문서감정의 제일인자 국과수 김형영 문서감정실장인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누구의 감정이 정확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김형영과는 국과수에 같이 근무하는 일도 있어 절친한 사이인데 그를 만나서 문의하여 보

면 된다고 말하였더니 이세용이 그렇다면 자기가 고소당하여 재판받고 있는 공갈죄의 항소심 재판도 있고, 또 자기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조병길이 자기에게 작성해준 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를 주장하면서 자기 회사를 말아먹을려고 하여 민사소송을 하고 있고, 또 조병길 고소한 사건도 있으니 그에 대한 필적감정의뢰가 있을 것인데 김형영실장을 자기와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위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국파수 감정이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김형영에게 그 감정이 들어오면 잘좀 살펴달라는 부탁을 해달라고 하여 그날은 일단 헤어졌다가 그 다음날 서소문동 소재 다방에서 이세용을 다시 만나 이세용으로부터 그 전날 말한 일에 대한 것으로 김형영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받아 그날 김형영에게 그 돈을 전달하였고 또 제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김형영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한뒤 김형영에게 위와같은 사실을 말하고 이세용을 한번 만나보겠냐고 하니 김형영이 만나겠다고 하여 위와같이 프라자호텔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여 세 사람이 함께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 : 그렇다면 피의자는 1989. 5. 하순경에 이세용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김형영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 예.

문 : 그러면 피의자는 1989. 여름에 이세용의 부탁으로 200만원을 김형영에게 전달한 것 이외에 그전에 한번더 돈을 전달하였다는 말인가요?

답 : 그것이 아니고 제가 전회에는 돈을 전달할 당시 날씨가 더웠다는 기억때문에 여름경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세 사람이 만났던 때를 기억해보니 세 사람이 만나기 전에 이미 이세용으로부터 받은 돈 200만원을 김형영에게 전해주었던 것이고, 이세용의 돈을 전해준 것은 그때 한번 뿐이며, 그 다음부터는 이세용과 김형영이 직접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중간에 돈을 전달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 : 피의자가 이세용의 부탁으로 김형영에게 200만원을 전달한 것은 1980. 5. 하순경이 정확한 것인가요?

답 : 예. 제가 1989. 여름경이라고 진술하였던 것은

결국 1989. 5. 하순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되어 그 당시 날씨가 더웠다는 것으로 여름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지금 만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이야기하다 보니 그때가 1989. 5. 하순경임을 기억하게 되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문 : 그 돈 200만원을 전달해 줄 때의 부탁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세용이 항소심 재판에 계류중이었고, 또 조병길과 민사소송을 하고 있었으며, 조병길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건이었고 그 사건들의 쟁점이 문서위조 여부였으므로 국파수에 문서감정이 들어갈 경우 그 감정을 잘해달라는 취지 이었고, 또 이세용과 만나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전회에 이세용의 형사사건 항소심에 대비하여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지금은 그 이외에 다른 건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것이 사실인가요?

답 : 지금 말한 것이 사실대로입니다. 만나게 된 경위로 기억해내니 그때 일이 좀더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문 : 1989. 6. 초순경 프라자호텔에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였나요?

답 : 호텔에서는 서로 인사만하고 조금 있다 호텔 부근에 있는 일식집에가서 회를 시켜 놓고 저녁과 술을 먹었는데 그때 이세용이 이의주의 감정서 사본을 김형영에게 보여주면서 자기의 사건이야기를 대충 해 준 뒤 그 감정이 맞느냐고 물어보니 김형영이 감정서를 검토해보더니 이의주의 감정이 엉터리감정이라고 말을 하였고, 또 법원에서 자기한테 감정의뢰를 하면 제대로 감정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이세용이 안심이 되는지 흡족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문 : 피의자는 김형영에게 5회에 걸쳐 돈을 전해주었는데 신찬석의 경우를 보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중 30% 정도를 자신이 빼어먹고 그 나머지 돈을 전달하였는데 피의자는 정말 한푼도 빼어먹지 않고 그대로 모두 전달하였나요?

답 : 제가 돈을 모두 김형영 실장에게 전달하면 김 실장이 술을 한잔 사주고 교통비조로 돈을 얼마 저에게 빼어주는데 그 돈을 받았지만 제가 처음부터 돈을

빼고 전달한 일은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김형영에게 전달한 돈중 얼마를 김형영으로부터 돌려받았나요?

답 :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고 이세용 건과 양승호 건으로는 돈을 전달해줄 때마다 술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그 돈을 김형영이 지불하여 그 액수는 잘 모르겠으나, 저에게 교통비조로 준 돈을 합하면 3-40만원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거의 경우에는 전네주는 돈도 적어서 받은 것은 없고 3-4만원 정도의 맥주를 불과합니다.

문 : 이상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 : 예.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 : 더 이상 할 말이나 유리한 증거가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 진술자 이 인 환

1992. 2. 17.

서 울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손 기 호

검찰주사 김 광 수

□자료 마-1-31 (공판기록 3077~3086) 증제27의 29

### 진술 조서

① 성 명 양 후 열 (梁 錢 烈)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거

집 : 사 :

④ 본 경

⑤ 직업 공무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정 담당)

⑥ 연령 40세 1952. 2. 27. 생

피의자 김형영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1.

2. 17.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

하다.

1. 저는 위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직원이며 별정직 6급입니다.

1. 그런데 저는 금번 김형영의 문서감정에 대한 검찰조사와 관련하여 저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감정 과정, 그 결정과정, 김형영이 감정관으로 감정한 사건의 심의를 함께 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고자 합니다.

이때 검사는 위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 문답하다.

문 : 진술인이 양후열인가요?

답 : 예. 제가 이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감정 담당자인 양후열입니다.

문 : 진술인은 언제부터 위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었나요?

답 : 1976. 6. 1자로 위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문 : 현재 근무지는 어디인가요?

답 : 법과학부 소속 문리분석과 문서분석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이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 분석실에서 근무하게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 1977. 6. 1. 자로 공채로 입사하여 그곳에서 문서감정에 대한 제반 기초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터득한 후 실무기간이 완료되어 1979. 6. 1자로 정식 발령을 받았습니다.

문 : 현재 위 문서분석실의 직원은 몇사람이나 있는가요?

답 : 김형영실장을 포함하여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실무감정인은 저와 최설, 진명수, 김형영 등이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의 문서분석실 업무와 진술인의 업무 내용은 어떤가요?

답 : 일선 수사기관에서 감정의뢰한 필적, 인영, 유가증권 등의 연구, 감정을 함께 하고 있고 제 업무는 위 사항 전반적인 것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정담당자 위 4명의 업무내용도 저와 같습니다.

문 : 문서감정 절차와 그 처리 과정은 어떠한가요.  
 답 : 저의 문서분석실에서 사건이 접수배당되면(사건배당은 김형영이 배당함) 지정된 감정인은 감정담당성이 있는지 감정타당성 여부조사를 하고 위 감정타당성을 거친후 본검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현미경, 고정밀 비교화대투영기, 입체현미경 자외선 투파광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종이 다음장에 생기는(간접적으로 생기는) 문자현출 기기는 이 에스 디 에이라는 기계를 사용하는데 장기훈 유서대필사건에 사용되었습 니다.

위와같이 감정을 하는 데 필적과 인영인 경우는 공동으로 70% 이상 공통점이 있으면 동일한 것으로 잠정결정을 하며, 60% 이하 45% 이상인 경우는 이동식 별불능결정을 하고, 45% 이하일 경우에는 상이한 필적으로 감정을 합니다. 다만 은폐나 모장된 필체의 경우와 인영의 특정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 : 위의 감정을 하여 최종판정은 누가 내리나요.  
 답 : 감정판이 감정을 한 후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데 심의자들 3사람과 공동의견이 되어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위 3사람들의 의견이 다르면 감정결과는 나오지 않고 다시 감정을 하여 보완을 하거나 시험을 다시하여 보완을 하여 모두 같을 때 결정을 합니다.

문 : 계속하여 심의한 결과가 각기 다를 때 어떻게 하나요?  
 답 : 시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때 결론을 유보하고 다시 의뢰한 기관에 보강자료를 요구하여 재검사 내지 재심사를 거쳐 다시 감정을 한 후 심의를하게 됩니다. 그래도 결론이 나오지 아니하면 감정불능 결정을 합니다.

문 : 진술인이 하는 일이나 김형영실장이 하는 일은?

답 : 다른 것은 없고 단지 그 사람은 실장일 뿐이며 하는 일은 같습니다. 업무내용도 같습니다.

문 : 김형영이 감정판으로 감정한 사건중 진술인이 심의를 한 사건이 있나요?

답 : 예. 물론 많습니다.

문 : 위 김형영이 감정판으로 된 사건 중 금번 문

제가 된 감정내용에 대하여 아는가요?

답 : 예. 이번에 김형영실장이 감정판으로 감정을 한 사건중 문제가 된 6건의 감정도 제가 다른 감정담당자들과 함께 심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위 6건의 감정내용과 감정결과에 대하여 진술하시오.

답 : 제가 일일이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마침 제출된 감정서철에서 관련된 부분을 보고 진술하겠습니다.

1) 1988. 8. 26. 서울 형사지방법원 제12부 김종식 부장판사가 감정의뢰하여 저희가 1988. 9. 23. 회보한 감정내용은 자기앞수표 7매의 후면 기재된 이세용 서명 필적, 이세용 명의 예금거래신청서, 이세용필적과 이동여부를 감정하여 달라는 것이었는데 결과는 이세용의 필적과 다르다고 감정하였고 위 감정판은 김형영 실장이었으며,

2) 1989. 10. 19. 서울지검 박순용 검사로부터 의뢰받아 동년 11월 3일자로 회보한 사건의 감정내용은 감정의뢰 사항이 많아 일일이 기재하기가 곤란하며 감정서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만 감정결과는 김형영실장이 감정한대로 저희도 의견의 일치가 되어 심의를 필하였고,

3) 1989. 12. 6.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3부 송재현 부장판사가 감정의뢰하여 같은 달 15일 회보한 감정내용은 임봉규의 이행보증각서와 인감증명서, 선서 및 조서말미에 대한 필적 및 인영감정을 하여 달라는 것인데, 감정결과는 임봉규의 필적과 인영이 동일한 것으로 판정을 하여 저희가 심의를 위한 사실이 있고,

4) 1990. 2. 8. 대전지방법원 김정호 판사가 의뢰하여 동년 4. 12 회보한 감정내용은 "조병길과 이세용의 인증촉탁서, 각서 등의필적과 인영의 변조여부"였는데 감정결과는 "조병길의 서명부분과 그의 내용부분 등 두종류로 구분되어 있으나 몇사람이 기재하였는지 여부는 식별되지 아니하고 다만 조병길의 서명 이외의 모든 필적은 상호 공통점이 있는 필적으로 감정되었고 조병길 서명부분에 기재된 필기구와 다른 내용부분의 기재된 필기구는 상이하며 어떤 방법에 의한 전사상태는 관찰되지 아니하고 필기구로 직접서명한 것으로 사료되고 조병길의 서명필적은 모방점이 없음"

이라고 감정결정을 하였고 저희도 같은 의견으로 하였고 인영도 "신영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과 조병길이 제출한 동명의 인영은 동일함"이라고 판정을 하여 저희도 같은 의견으로 심의하였습니다.

5) 1990. 7. 10. 전북도경에서 의뢰하여 같은 날 19일자로 회보한 감정내용은 유언서 조종섭의 인영에 대한 이동여부였는데 감정결과는 '상호동일'이라는 감정결과를 하였고 저희도 앞에서처럼 심의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6) 1990. 7. 23. 전북도경에서 감정의뢰되어 동년 8월 10일자로 회보한 감정내용은 당시 조종섭 명의의 유언서 조종섭자필 진정서(원본은 전북지검에 비치)의 동일여부였는데 감정결과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상호 공존하기 때문에 식별불능으로 감정회보 하였습니다.

문 : 위 6건의 감정내용은 모두 김형영이 감정판이었고 진술인이 심의를 하였나요.

답 : 예. 그 당시 지정감정판이 김형영실장이었고 심의는 저와 지명수, 최섭 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이 그 당시 김형영실장의 감정에 대하여 동의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답 : 모든 감정결과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였고 타당성이 역시 저와 같았기 때문에 동의하였습니다.

문 : 그런데 맨 마지막의(6번) 유서사건의 ??????? 그런가요.

답 : 식별불능 사유는 유언서 자체가 불안정하고 심하게 흘려 있어 불능으로 감정을 하였습니다.

문 : 김형영의 의견과 달라 진술인이 다른 의견을 내세워서 불능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요.

답 :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앞에서 진술한 대로입니다.

문 : 위 6건의 감정의뢰한 내용중 진술인이 다른 의견이 있었던 내용이 있었나요.

답 : 위 6건중에 제가 김형영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문 : 김형영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한 사람 또는 그 반대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어떤가요.

답 :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문 : 김형영이 받은 돈을 진술인도 김형영으로부터 받아쓴 것이 아닌가요.

답 : 저는 절대로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 김형영과 같은 의견으로 심의를 하게하여 부탁하지 않던가요.

답 :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 위 감정은 김형영이 허위감정을 하고 진술인은 위 허위감정인 것을 알면서도 김형영 부탁을 받고 그대로 심의를 한 것이 아닌가요.

답 :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문 : 허위감정이 아니라면 김형영이 왜 돈을 받고 감정을 하여 줄 수가 있나요.

답 : 그가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그 당시 몰랐으나 제가 심의한 내용은 김형영실장의 의견과 같았습니다.

문 : 이상 진술이 사실대로인가요.

답 : 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문 :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이 엄청난 사건이 당시 문서분석실에서 일어난데 대하여 할 말이 없습니다만 허위감정을 심의한 것은 아닙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날인케 하다.

진술자 양 후 열

1992. 2. 17.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우경

검찰주사 박인기

■자료 마-1-32 (공판기록 3087~3093) 증제27의 30

피의자 신문조서

(제 3 회)

성명 이인환 주민등록번호

7) 복사상태 불량으로 판독 불가.

위의 사람에 대한 뇌물공여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2. 2. 24.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김우경은 검찰  
주사보 주남수를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  
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린 즉 신문에 대해 진술하  
겠다고 대답하다.

문 : 전회까지의 진술은 모두 사실대로 진술한 것  
인가요.

답 : 예.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는 이세용이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1988. 7. 경 양종석이라는 사람이 같이  
일을 하던 신찬석에게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신찬석이  
저에게 감정을 하라고 서류를 건네주어 그 서류를 보  
니 이세용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예금청구서 및 자기  
앞수표 뒷면이서에 쓰인 이세용의 필적이 이세용이  
쓴 지술서상의 이세용필적과 동일한 필적인지 감정을  
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그때 처음으로 이세용의 이름  
을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모두 사실입니다.

문 : 이송운의 진술에 의하면 1988. 6. 10. 경 양종석  
으로부터 위 이세용의 자술서 및 자기앞수표 뒷면이  
서의 필적 등에 대한 감정의뢰를 받았는데 3명의 감  
정을 받아달라고 하여 신찬석과 피의자에게 위 이세  
용필적에 대한 감정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지난번 진술시에는 제가 간단하게 신찬석으로  
부터 위 이세용필적에 대한 감정의뢰를 받았다고 하  
였는데 자세히 말씀드리면 신찬석이 이송운의 사무실  
에 갔다오더니 위 이세용의 필적감정건을 가지고 와  
서는 두 사람의 감정서를 받아달라고 하니 제게도 감  
정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양종석이 이송운에게 감정  
의뢰를 하였고 이송운은 신찬석을 통해 신찬석과 저  
의 감정서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감정  
의뢰를 받은 때가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1988. 7. 경이  
라고 하였는데 양종석이 1988. 6. 10. 경 이송운에게 감  
정의뢰를 하였다면 제가 감정의뢰를 받은 것도 이때  
쯤이 맞습니다.

문 : 이송운으로부터 신찬석을 통해 이세용의 필적  
에 대한 감정의뢰를 받고 감정료는 얼마를 받았는가

요.

답 : 신찬석이 이송운으로부터 감정료로 6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제게 30만원을 주기에 30만원을 받  
고 감정을 한뒤에 신찬석과 저의 감정서를 가지고 이  
송운의 사무실로 찾아가 감정료가 너무 적다고 하며  
50만원을 더 달라고 하였더니 이송운이 알았다고 하  
더니 같은 달 말경 제가 이송운의 사무실에 들렸더니  
50만원을 주기에 받아 모두 80만원을 받았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 이세용의 필적감정을 해주고 80  
만원 외에 이송운으로부터 또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가요.

답 : 이세용의 필적감정과 관련하여 80만원만 받았  
고 그의 돈을 더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문 : 80만원이라는 감정료는 어떻게 하여 산출된  
것인가요.

답 : 당시 이세용의 필적감정의뢰를 받았을 때 감  
정대상 서류 복사물과 이송운이 감정대상 서류를 사  
진촬영한 사진들을 주면서 감정을 해달라고 하여 문  
서감정인협회에서 정해놓은 문서감정 요금표에 의해  
계산을 해보니 감정료가 80만원이 나와 제가 감정료  
로 80만원을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위 이세용의 필적감정을 해준 뒤에  
감정료 관계로 이송운을 찾아간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신찬석이 처음에 이송운으로부터 60만원을 받  
아왔다고 하며 제게 3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  
렇게만 알고 있을 뿐이고 그 자세한 내막을 저는 모  
르겠습니다.

답 : 예. 1988년 말에서 1990. 초경으로 기억되는데  
이송운이 위 이세용의 필적감정을 해주고 감정료로  
800만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아 제가 신찬석에게 이  
소문에 대하여 물어보았더니 자기도 그런 말을 들었  
다고 만하여 제가 직접 이송운에게 찾아가 감정료로  
800만원을 받았다는 말이 들리는데 사실이냐고 물었  
더니 이송운이 250만원밖에 받은 것이 없다고 하였습  
니다.

문 : 피의자가 위 이세용의 필적감정의뢰를 받은  
후 며칠만에 감정을 끝내고 감정서를 이송운에게 가  
져다주었나요.

답 : 당시 이세용의 보석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며

빨리 해달라고 하여 감정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후에 감정을 끝내고 저의 감정서를 이송운에게 가져  
다주었습니다.

문 : 유리한 증거나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  
한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진술자 이 인 환

1992. 2. 24.

서 울 지 방 검 찰 청

검 사 김 우 경

검찰주사(보) 주 남 수

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이화삼 23110-8795

시 행 일 자 88. 9. 23.

기안 책임자 김 형 영

수 신 서울형사지방법원 제12부

참 조 재판장 판사 김 종 식

발 신 명 의 소 장

제 목 필적감정 의뢰 회보

1. 귀원 88고합664호(1988. 9. 12) 관련입니다.

1. 위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별지와 같이 회보합니다.

첨 부 1. 감정서 1부.

1. 사진 16매.

증거물 : 1. 자기앞수표 7매

2. 예금거래신청서 및 청구서 2장

3. 이세용의 자술서 9매. 끝.

## 서 울 지 방 검 찰 청

수 신 검 사 김 우 경  
제 목 수사보고

피의자 양종석이 이세용의 필적감정을 담당  
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들에게 청탁하여 이세  
용에게 유리한 감정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상 피의자 이송운에게 1988. 8. 24. 200만원, 같은 해  
9. 22. 250만원을 계좌 송금하였다는 진술에 따라 국  
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위 이세용의 필적감정을 한 사  
실여부를 확인한 바, 1988. 8. 22. 피고인의 변호인이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감정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동 법  
원에서는 같은 달 26.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위 이세  
용의 필적감정 의뢰를 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는 같은 해 9. 23. 이세용의 필적감정을 완료하여 회  
보하였음을 확인하였기 이세용에 대한 감정서를 첨부  
하여 보고합니다.

첨 부 : 감정서 1부. 끝.

1992. 2. 24.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주 남 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에 따른 특별상이 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일반적 특별상이 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일반적 특별상이 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에 따른 특별상이 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일반적 특별상이 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일반적 특별상이 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자료 마-1-32 (공판기록 3102~3108) 증제27의 32

## 피의자 신문조서

(제 2 회)

성명 이 송 운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2. 2. 28. 서울지방검찰청 1227호 검사실에서 검사  
공성국은 검찰주사 윤시균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린 즉 신문에 따  
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피의자가 전회에 진술한 바 있는 이송운인가  
요.

답: 예, 제가 이송운입니다.

문: 전회의 진술은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나요.  
이때 피의자에 대한 전회(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진  
술내용을 들려준 바,

답: 예, 대부분 사실인데 제가 사실은 이인환에게  
돈을 주었던 것은 5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으로서 50  
만원을 준 이후에 또 50만원을 더 주었던 사실이 있  
습니다.

문: 그러면 피의자가 이인환에게 돈을 주었던 일  
시, 장소 및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예, 제가 이인환에게 돈을 주었던 것은 50만원  
씩 두번 주었는데 처음에 주었던 것은 1988. 7. 일자  
불상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장소는 저의 사무실인  
한국문서감정원 사무실에서 이인환이 저의 사무실에  
들렸을 때에 돈을 주었고, 두번쩨는 1988. 8. 하순경  
이었던 것으로서 장소도 같은 저의 사무실이었는데  
그때에는 양종석이 저에게 전화하여 변호사가 법원에  
국과수에 감정신청을 하였으니 알아봐달라는 전화가  
있어 이후로서 이인환이 국과수에 들어갈 일이 있다  
고 저의 사무실에 들렸기에 이세용의 문서가 국과수  
에 감정신청이 들어왔는지 알아보라고 하면서 그때에  
50만원을 주었던 것으로 두번에 걸쳐 100만원을 주었  
던 것입니다.

문: 피의자가 이인환에게 돈을 주었던 때가 1988

7.경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을 하나요.

답: 그때는 처음 제가 양종석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아 감정하여 주었던 때에 신찬석과 이인환의 감정  
도 같이 받아주었던 것으로 감정결과가 88. 6. 16.경에  
나왔는데 그 무렵에 감정서를 가져온 신찬석에게 두  
사람의 감정료로 70만원을 주었는데 그 이후 이인환  
이 저에게 와서 35만원밖에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50  
만원을 더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두번쩨는 양종석  
으로부터 감정신청을 하였다는 전화연락을 받은 이후  
에 이인환이 국과수에 들어갈 일이 있다고 하여 들어  
가면 이세용의 감정에 대하여도 알아보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던 것입니다.

문: 그러면 피의자가 전회에 이인환에게 돈을 100  
만원을 주었다가 50만원만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양종석의 연락을 받고 이세용의 감정건이 국  
과수에 접수된 후에 동건과 관련하여 돈을 주었던 것  
이 50만원이라는 취지로 50만원만 주었다고 한 것인  
가요.

답: 예, 그 50만원도 마침 이인환이 국과수에 들어  
갈 일이 있다고 하여 들어가면 이세용의 감정건에 대  
하여 알아보라고 하였던 것인데 이세용의 감정에  
대하여 부탁을 하는 교체비로 돈을 주었던 것은 아닙  
니다.

문: 그러면 피의자가 양종석에게 위 피의자들의  
감정결과가 나온 이후에 양종석에게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한 적은 있는가요.

답: 예, 전화를 한 적은 여러번 있습니다.

문: 피의자가 양종석으로부터 돈을 그후에 받았던  
날은 1988. 8. 22.에 200만원을 받았고, 그후 동년 9.  
22.에 양순화 명의로 250만원을 송금받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답: 그것은 처음에 양종석으로부터 200만원을 받  
은 것은 제가 전화를 하여 동인으로부터 받았는데, 나  
중에 받은 250만원은 양종석이 그 돈은 한치준에게  
연락하여 받으라면서 한치준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  
어 동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늦어서 미안하다며 온  
라인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하여 가르쳐 주었더니 자기  
직원인 양순화를 시켜서 250만원을 보내주었던 것입  
니다.

문: 그러면 피의자가 양종석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1988. 8. 22.에는 이세용측의 변호사가 법원에 국과수  
감정신청을 한 날로서 피의자는 양종석으로부터 동  
사실도 돈을 받은 그날 알았나요.

답: 예, 그것이 8. 22.인지는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  
다만 양종석으로부터 변호사가 국과수 감정신청을 하  
였다는 말과 그날 돈을 송금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 그리고 피의자가 이인환에게 이세용의 감정이  
국과수에 접수되었는지를 알아보라고 한 것은 양종석  
의 연락을 받은 이후라면 1988. 8. 22. 이후가 되는 것  
이 아닌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의자가 이인환에게 이세용의 감정신청이 국  
과수에 접수되었다는 것을 알아보라고 한 것은 몇번인가요.

답: 지금 저의 기억으로는 제가 양종석의 연락을  
받은 직후에 한번 알아보라고 이인환에게 하였더니  
이인환이 국과수에 갔다와서는 아직 접수가 되지 않  
았다고 하고, 두번쩨는 그 며칠후에 또 이인환이 갔다  
와서는 그때는 접수가 되었다고 하고, 세번째에는  
한참 후로서 그때는 국과수 감정결과가 법원에 회시  
가 되었더라고 하여서 세번을 갔다온 것으로 기억합  
니다.

문: 피의자가 한치준으로부터 받았다는 250만원을  
받은 것은 1988. 9. 22.이고, 국과수 감정결과 회시는  
그 다음날인 9. 23.이고, 피의자가 양종석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날은 변호사가 법원에 국과수 감정신  
청을 하였던 같은 날인 1988. 8. 22.인데 그 200만원  
과 250만원은 양종석이 피의자에게 부탁한 국과수 감  
정에 대하여 주었던 돈은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그리고 피의자와 신찬석, 이인환이 양종석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하여 결과를 주었던 것은 1988. 6.  
16.에 감정서가 나왔고, 그 감정서가 법원에 접수된  
것은 6. 27.로 확인되었는데 동 감정에 대하여는 동년  
6. 10.경 양종석으로부터 감정료를 이미 받았던 것이  
아닌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의자가 이인환에게 50만원씩을 두번 주었던

것은 신찬석도 알고 있나요.

답: 신찬석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고, 이인환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 피의자가 감정료를 얼마를 받았다는 것은 신  
찬석, 이인환도 알고 있었나요.

답: 그 사람들은 제가 얼마를 받았다는 것은 모  
르고 있습니다.

문: 더 할 말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이상 진술은 모두 사실대로 진술한 것인가요.

답: 예, 사실대로 진술한 것입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  
한대로 오기나 중간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  
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진술자 이 송 운

1992. 2. 28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공성국

검찰주사 윤시균

## 피의자 신문조서

(제 3 회)

성명 이 송 운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2. 2. 28.  
서울지방검찰청 1227호 검사실에서 검사 공성국은 검  
찰주사 윤시균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  
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린 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  
겠다고 대답하다.

문: 피의자의 전회까지의 진술은 모두 사실대로  
진술한 것인가요.

답: 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문: 피의자는 양종석에게 1988. 6. 16.경 피의자와

신찬석, 이인환의 감정서를 준 이후 1988. 8. 22에 양종석으로부터 200만원을 받기 이전에 감정건에 관하여 전화를 한 적이 있나요.

답 : 예, 제가 양종석에게 3-4회 정도 전화를 하였고, 한치준에게 한번 전화를 하였으며, 양종석으로부터 전화를 2-3회 정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피의자가 양종석과 전화통화한 내용은 어떠한 것이었나요.

답 : 저는 감정료를 빨리 보내주라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문 : 감정료는 88. 6. 10경 감정의뢰를 받을 때에 건당 80만원씩으로 계산하여 양종석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답 : 예, 그런데 사실은 감정료로는 한 사람당 200만원씩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감정료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문 : 양종석 진술에 의하면 감정의뢰 당시에 감정료는 피의자가 국과수의 감정에 대하여도 결과가 좋게 알아봐주겠다고 하여 감정의뢰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감정료는 감정의뢰 당시에 가지고 있던 돈으로 감정료를 지불하였다고 하였으며 그후 1988. 8. 22에 2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던 것은 그무렵 변호사가 법원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신청을 하여 동 감정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부탁하고 돈을 보내주었던 것이라고 하는데 국과수 감정신청을 한 날 돈을 보내주면서 그에 대한 대화는 전혀 없었다는 말인가요.

답 : 국과수 감정에 대하여도 감정의뢰 당시에 저에게 부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후에 전화통화시에도 양종석은 국과수 감정에 대하여도 부탁을 하였던 것도 사실인데 저는 처음에 감정료로 받기로 한 돈으로 생각하고 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는 그 돈으로 생각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종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과수 감정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피의자에게도 그에 관한 부탁을 하였던 것이라고 하는데 어떠한가요.

답 : 양종석이 국과수 감정에 대하여 부탁을 하였던 것은 감정의뢰할 때에도 하였고, 또 나중에 전화통

화에서도 그러한 부탁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제가 받을 감정료로 생각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문 : 그러나 양종석이 당시 피의자에게 국과수 감정에 관하여 부탁하는데 피의자가 국과수 감정에 대하여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으면 돈을 송금하여 주었겠는가요.

답 :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문 : 그리고 그 돈도 피의자들의 감정결과가 나와서 법원에 제출된 2개월이 지난 후에 돈을 보내주었으며, 그 돈을 보내준 남자가 이세용측의 변호사가 법원에 국과수 감정신청을 한 날 돈을 보내주었으면 양종석의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국과수 감정에 대하여도 알아봐주는 것으로 알고 돈을 보냈을 것이고, 또 피의자도 그러한 말을 양종석에게 하였으니까 돈을 보내주었을 것이 아닌가요.

답 : 예, 그 당시 양종석이 국과수 감정에 대하여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고, 저도 양종석에게 국과수 감정에 대하여 알아봐주겠다고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 : 그리고 그 후 1988. 9. 22에 250만원을 받은 것도 국과수 감정회시가 있기 하루전에 송금하여 주었던 것으로서 동 금원도 피의자가 양종석에게 국과수 감정에 관하여 사용되는 돈이라는 것을 통화를 하였으니 그렇게 알고 돈을 보내주었을 것이 아닌가요.

답 : 예, 양종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알고 돈을 보내주었을 겁니다.

문 : 그렇다면 결국 피의자가 1988. 8. 22과 동년 9. 22에 받았던 200만원과 250만원은 이세용의 국과수 감정건에 관하여 사용되는 돈으로 알고 보내주었을 것이 아닌가요.

답 : 예, 양종석이나 한치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알고 돈을 보내준 것은 사실입니다.

문 : 그러면 국과수 감정에 관하여 위 45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기로 하였나요.

답 : 그 돈을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하여는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문 : 그러나 양종석의 입장에서는 이세용의 석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던 때인데 이세용에게 유리한 감정결과가 나오도록 주선해달라는 돈이 아니었나요.

답 : 예, 그것은 제가 감정해준대로 국과수에서도 수표에서 필적이 이세용의 필적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문 : 양종석이 위 450만원을 송금하여 준 시기에는 피의자들의 감정서는 이미 법원에 접수가 되어 있을 때이고, 또한 그 시기는 국과수 감정신청을 하여 회시가 되는 그 시기로서 양종석의 입장에서는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을 것이 아닌가요.

답 : 예, 양종석이는 저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 : 그런데 피의자는 위 450만원은 전혀 국과수 직원에게는 준 적이 없는가요.

답 : 예, 국과수 직원들에게는 전혀 돈을 준 사실이 없습니다.

문 : 이상 진술은 모두 사실인가요.

답 : 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밀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진술자 이 송운

1992. 2. 28.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공성국

검찰주사 윤시근

■자료 마-1-36 (공판기록 3115~3127) 증제27의 34

### 피의자 신문조서

(제 2 회)

성명 신찬석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에 대한 제3자 뇌물교부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2. 3. 2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김우경은 검찰주사보 주남수를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린 즉 신문에 따라 진술

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 전회 진술은 사실대로 진술한 것인가요.

답 : 예,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는 1990. 7. 31 이귀덕으로부터 김형영에게 전해달라는 출장비 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해보시오.

답 : 1990. 11. 3경 전주에 산다는 이귀덕이 저의 사무실로 찾아와 남편 조종섭이 사망하면서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가 남편의 필적이 아닌 위조된 것이니 감정을 해달라고 하여 제가 같은 달 7. 필적감정을 해주었는데 조종섭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결과를 통보해주었습니다. 그후 1990. 7. 하순경 이귀덕이 저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저의 필적감정 결과를 믿고 전북도경에 고소하였는데 전북도경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감정 의뢰를 하여 국과수 직원이 감정판례로 전주로 출장을 나오게 되어 있는데 언제 전주로 출장을 내려오는지 알아봐달라고 하여 제가 김형영에게 전화를 하여 “이귀덕이 고소한 사건관계로 전주에 출장을 간다는데 언제 출장을 가느냐”고 물었더니 김형영이 “이틀 후에 출장을 간다”고 알려주어 제가 이 내용을 이귀덕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더니 이귀덕이 90. 7. 31. 14:00경 저의 사무실로 찾아와 “김실장에게 출장비를 전해달라”고 하며 50만원(10만원 수표 3매, 현금 1만원권 20만원)을 건네주기에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 이귀덕이 피의자에게 감정의뢰하여 피의자가 감정해 준 감정서가 이것인가요.

이때 검사는 기록 제 정의 감정서를 피의자에게 보여준 바,

답 : 예, 제가 이귀덕의 의뢰를 받아 조종섭의 필적을 감정해준 감정서가 맞습니다.

문 : 이귀덕이 김형영에게 출장비를 전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제가 이귀덕의 의뢰를 받아 조종섭의 필적이 상이하다고 감정을 해주었는데 김형영실장도 조종섭의 필적감정을 하면서 저의 감정과 같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감정결과가 나오도록 해달라고 부탁하

는 뜻으로 출장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입니다.

문 : 그렇다면 이귀덕이 피의자에게 준 50만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문서감정업무를 담당하는 김형영에게 문서감정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뇌물인 것이군요.

답 : 예, 이귀덕으로서는 김형영에게 잘 부탁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감정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 출장비 명목을 붙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종의 뇌물입니다.

문 : 피의자는 이귀덕으로부터 50만원을 받아 어떻게 하였나요.

답 : 제가 돈을 받은 후 즉시 김형영에게 전화를 하여 “이귀덕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았는데 직접 전해줄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입금시켜 줄까” 물었더니 김형영이 서울신탁은행의 자기구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온라인입금을 시켜달라고 하여 제가 90. 8. 1. 직접 서울신탁은행 남대문지점에 가서 김형영의 계좌로 온라인입금을 시켜 주었는데 15만원을 공제하고 35만원을 입금시켜 주었습니다.

문 : 15만원을 공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저희 감정업계에서는 다른 감정업자에게 감정의뢰를 할 경우 소개해주는 사람이 감정료 중에서 수수료로 30%를 공제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데 제가 김형영에게 이귀덕으로부터 받은 50만원을 받았다고 하였더니 15만원을 공제하고 35만원만 보내라고 하여 35만원을 보낸 것입니다.

문 : 이것이 피의자가 김형영에게 35만원을 입금시킨 내용이 맞는가요.

이때 검사는 당청 92압제 호 김형영의 자유저축예금 통장을 피의자에게 보여준 바.

답 : 예, 제가 서울신탁은행 남대문지점에서 90. 8. 1. 13:00경 온라인입금시킨 내용이 맞습니다.

문 : 김형영에게 위와 같이 돈을 준 후에 이귀덕사건의 필적감정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가요.

답 : 90. 8. 10. 국과수에서 김형영이 감정결과를 통보하였는데 필적에 일관성이 없어서 상호식별불능으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그렇다면 국과수의 위와같은 감정결과는 이귀덕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가요.

답 : 불리할 것도 없고 유리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국과수에서 식별불능이라고 통보하면 판사 심증으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 : 국과수의 김형영은 식별불능이라고 감정하였는데 피의자는 어떻게 하여 다른 필적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나요.

답 : 제가 보기에는 서로 다른 필적이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필적이라고 감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문 : 김형영에게 출장비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는데도 이귀덕에게는 유리한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귀덕이 돈을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던가요.

답 : 그 후로는 이귀덕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는 김형영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는가요.

답 : 김형영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문 : 김형영은 위 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35만원은 피의자에게 빌려준 50만원중의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답 : 김형영이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저는 김형영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도 없고 돈을 빌려쓴 사실도 없습니다.

문 : 피의자는 90. 9. 초순 양승호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그 경위를 자세히 진술해보시오.

답 : 1988. 11. 2. 양승호로부터 필적감정의뢰를 받았는데 강태호 명의로 작성된 보관증의 가필부분이 위조되었는지 여부를 감정해달라는 것으로 같은 달 10.동시에 동일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감정결과를 통보하여 주었습니다. 그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90. 9. 초순경 갑자기 양승호가 저의 사무실에 나와서는 국과수의 김형영이 위 보관증에 대한 필적감정을 하였는데 불리한 내용으로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국과수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는데 어떤 내용의 회신이 올지 궁금하다고 하여 저의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이인환이 김형영과 국과수에서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였기 때문에 김형영과 잘 통하는데 이인환을 통해 김형영에게 부탁을 해보자고 하면서 모든 일이

빈손으로 되지 않으니 100만원 정도만 준비해서 김형영에게 전달을 하자고 하였더니 양승호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며 이를 후에 100만원을 저의 사무실로 가져왔기에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 이것이 피의자가 양승호의 의뢰를 받아 필적감정한 감정서인가요.

이때 검사는 기록 제 정의 감정서를 피의자에게 보여준 바.

답 : 예, 제가 양승호의 의뢰를 받아 필적감정해준 보관증에 대한 감정서가 맞습니다.

문 : 양승호의 진술에 의하면 “국과수에서 김형영이 회보한 감정내용이 저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태인데 다시 사실조회 신청을 해놓아 어떻게 회신이 올지 궁금하여 찾아왔다”고 하자 피의자가 “김형영이 국과수에 들어갈 때 내가 추천을 해주었고 5공화국에 들어서 허위감정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것을 항소하였을 때 내가 유리한 증언을 해주어 무죄를 받아 복직한 사람으로 내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할 것이다”라고 하여 양승호가 그러면 김형영에게 부탁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없겠느냐고 사정하였더니 피의자가 “모든 일이 빈손으로 되겠느냐”고 하며 돈을 갖다 주어야 된다는 뜻을 비쳐 얼마정도 갖다드리면 되겠느냐고 문자 피의자가 노골적으로 “100만원을 달라”고 하여 이를 후에 피의자에게 100만원을 갖다 주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양승호가 약간 과장되게 이야기한 것은 있는 데 대체로 위와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습니다.

문 : 그렇다면 양승호가 피의자에게 제공한 100만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문서감정업무를 담당하는 김형영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뇌물이지요.

답 : 예, 그것은 김형영이 사실조회 회신을 할 때에 양승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신을 해달라고 청탁을 하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김형영에게 공여한 뇌물입니다.

문 : 양승호로부터 위와같이 100만원을 받아서 어떻게 하였나요.

답 : 제가 이인환에게 100만원을 주면서 김형영에게 갖다 주라고 하였더니 이인환이 저희들 관계대로

30만원을 제게 떼어주며 나머지 70만원은 김형영에게 전달한다고 가져갔습니다.

문 : 이인환에게 양승호가 준 100만원을 주면서 김형영에게 갖다 주라고 하였을 때 이인환은 어떤 명목으로 김형영에게 전달해 주는 돈인지 그 내막을 알고 있었나요.

답 : 예, 이인환도 제가 양승호와 사실조회 회신관계로 이야기를 할 때 함께 있었기 때문에 100만원이 양승호 사건의 사실조회 회신을 양승호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뇌물로 김형영에게 전달되는 돈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 : 이귀덕이 준 출장비를 전해줄 때는 피의자가 직접 김형영과 통화하여 전달하였는데 양승호건으로 100만원을 전달할 때에는 이인환을 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제가 김형영에게 돈을 전해주려고 하면 제가 김형영보다 나아도 많고 서로 어려운 관계이기 때문에 잘 받지 않는데 반해서 이인환과 김형영은 서로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였고 터놓고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인환이 전달하면 김형영이도 이인환을 믿고 돈을 받기 때문에 이인환을 시킨 것입니다.

문 : 피의자가 이인환에게 100만원을 준 때는 언제이며 이인환이 이 돈을 김형영에게 전달하였는가요.

답 : 저는 양승호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날 바로 이인환에게 전달하였고 며칠 후에 이인환에게 돈을 김형영에게 전달하였는지 물어보았더니 이인환이 전달하였다고 대답을 하여 70만원이 김형영에게 전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이후에도 양승호로부터 2회에 걸쳐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았는데 그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 90. 12. 3. 양승호가 저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김형영이 재감정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김형영에게 로비를 하여 재감정 실험을 할 때에는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청탁을 해달라고 하여 200만원을 보낼 테니 제 구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저의 우체국 계좌번호인 을 알려주었더니 그날로 200만원을 입금시켜 주었습니다. 다음날 삼성빌딩 우체국에서 200만원을 인출하여 이인환에게 주면서 양승호가 김형영에게 로비활동을 해달라고

주는 돈이라고 하면서 김형영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더니 이인환이 30%인 60만원을 제게 공제하여 주고 나머지 140만원을 김형영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인환이 양승호에게 200만원으로는 부족하니 200만원을 더 보내라고 하자 양승호가 12.5. 위 온라인구좌로 200만원을 추가로 송금해 주어 다음날 200만원을 삼성빌딩 우체국에서 인출하여 이인환에게 주었더니 이인환이 60만원을 제게 주고 나머지 140만원을 김형영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문 : 양승호에게 4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인환이 아니라 피의자가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요.

답 : 200만원은 양승호가 김형영에게 로비활동을 해달라며 스스로 보내준 것이고, 나머지 200만원은 이인환이 양승호에게 요구하여 보내온 것으로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문 : 피의자가 양승호로부터 400만원을 입금받아 이인환에게 전해준 것은 국과수에서 문서감정업무를 담당하는 김형영에게 청탁하기 위한 뇌물로 공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전달한 것이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양승호가 400만원을 보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문 : 위 400만원은 김형영에게 청탁하기 위한 뇌물이 아니라 양승호사건의 재감정실험을 하기 위해 3사람이 실험용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실험용 문서작성을 위한 필경사 비용으로 보낸 것이 아닌가요.

답 : 양승호의 재감정실험을 위해 필경사를 구해야 된다는 내용의 이야기는 있었으나 위 400만원은 필경사 비용이 아닙니다. 양승호가 김형영에게 청탁을 하여 재감정실험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로비활동을 해달라고 하여 보낸 돈입니다.

문 : 돈을 이인환이 김형영에게 전달하였는가요.

답 : 이인환이 김형영에게 돈을 전달하였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 피의자는 양승호사건으로 보관증에 대한 필적감정에서 동시에 동일필적으로 작성된 문서라고 감정하였는데 어떻게 하여 김형영은 위 보관증이 변조되었다고 감정을 하였을까요.

답 : 저는 양승호가 가져온 보관증 1장만 감정을 하였는데 국과수에서 김형영은 보관증을 비롯한 여러

장의 문건을 감정을 하여 본 결과 변조되었다고 감정을 한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김형영에게 전달하라고 이인환에게 돈을 주었을 때 이인환이 30%를 공제하여 피의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김형영에게 갖다 주었다고 하였는데 피의자가 먼저 3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이인환에게 주면서 김형영에게 전달하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요.

답 : 저는 이인환에게 전액을 주려고 하였는데 이인환이 30%를 공제하고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인환의 말대로 30%를 공제하고 이인환에게 준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1988.6.10경 이송운으로부터 이세용의 필적감정의뢰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당시 이송운으로부터 2사람의 감정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감정료로 7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 이송운으로부터 이세용의 필적감정의뢰를 받고 감정료는 모두 얼마나 받았는가요.

답 : 처음에 이송운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을 때 70만원을 받아 35만원을 이인환에게 주면서 필적감정을 해달라고 하였고, 저도 감정을 한뒤에 일주일쯤 후에 이송운에게 감정서를 가져다 주었으며 그로부터 약 1개월 반쯤 후에 이송운으로부터 추가로 감정료 50만원을 받아 총 85만원의 감정료를 받았습니다.

문 : 이송운은 위 이세용 필적감정전으로 피의자에게 약 150만원의 감정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그것은 이송운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위 이세용의 필적감정관계로 이송운과 싸움도 많이 하였습니다. 이송운이 부탁한 이세용의 필적감정료는 감정물이 많아서 감정료가 150만원이 넘는다 35만원만 처음에 지급하고는 감정료를 전혀 주지 않아서 몇차례 독촉을 한 끝에 겨우 50만원을 더 받았을 뿐입니다.

문 : 유리한 증거나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제가 몸이 아프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진술자 申 燥 碩

1992.3.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우경

검찰주사(보) 주남수

□자료 마-1-37 (공판기록 3128~3135) 증제27의 35

### 피의자 신문조서

(제 2 회)

성명 양종석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에 대한 제3자 뇌물수교부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2.3.2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김우경은 검찰주사보 주남수를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린 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 전회 진술은 모두 사실대로 진술한 것인가요.

답 : 예,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가 이송운에게 돈을 입금시켜 주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 이세용이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을 때 이세용의 변호사인 곽동현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곽동현 변호사를 만났더니 문제가 되어 있는 자기앞수표 뒷면의 배서필적을 감정해오라고 하며 부근의 필적감정을 해주는 곳이 있다고 하여 88.6.초순 일자 불상 1600경 이송운의 사무실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송운을 만나 자기앞수표 복사물을 제출하며 필적감정의뢰를 하였더니 이송운이 한 사람에게 감정을 받는 것보다는 3사람에게서 감정을 받아보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하며 3사람으로부터 감정을 받아야 된다고 종용하였고, 또 사설감정인에게 감정을 받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에서 감정을 받아야 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을 받으려면 3~4개월씩이 걸리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손을 쓰면 감정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손을 쓰려면 금품을 주어야 된다고 하여 당일 감정료로 200만원을 이송운에게 주었고, 그 후 같은 해 8.24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청탁교제비로 200만원, 같은 해 9.22 같은 명목으로 250만원을 이송운의 구좌에 입금시키게 된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전회 진술시에는 이송운에게 한 사람당 감정료 80만원씩 이송운, 이인환, 신찬식 등 3명의 감정료로 25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제와서는 감정료로 2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가요.

답 : 지난번 진술시에는 오래전의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아 감정료로 모두 25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당시 감정료로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 진술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 : 3사람의 감정을 받기로 하면서 감정료로 200만원씩 지급하였다면 1인당 감정료는 얼마씩으로 정한 것인가요.

답 : 이송운이 감정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청탁교제비 등을 합쳐서 한꺼번에 65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명목상으로는 1인당 감정료로 200만원씩, 그리고 감정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감정사들의 회식비 50만원 등으로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감정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청탁교제비 등을 모두 합쳐 650만원입니다.

문 : 이송운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청탁을 하여 감정을 빨리 잘 받아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송운이 어떻게 청탁을 한다고 하던가요.

답 : 이송운이 자신은 대한민국 최초의 감정사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근무도 하였고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모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며 감정관계는 자기가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나 자기만 믿으면 된다라고 과시를 하면서 자기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손을 쓰면 3~4개월 걸리는 감정도 1달이면 해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문 : 당시 이세용의 필적감정을 의뢰하면서 국립과

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을 빨리 받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답 : 당시 이세용이 88. 6. 3. 구속기소 되었는데 1심에서 보석신청하기 위해 필적감정을 하는 것인데 필적감정을 하는데 3~4개월이 걸린다면 1심재판이 다 끝난 뒤가 되므로 필적감정을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빨리 필적감정을 받아서 보석신청을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문 : 이송운 등 사설감정인의 감정서는 언제 받았나요.

답 : 88. 6. 16.경 이세용 소유의 중경건설(주) 대표 이사인 한치준이 찾다가 변호사 사무실에 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그렇다면 이송운 등 사설감정인 3명의 감정서를 받을 때 까지는 감정료로 모두 200만원만 지급한 것이군요.

답 : 예, 이송운 등 3명의 사설감정인의 감정서를 받는데 감정료로는 총 20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문 : 위와 같이 감정서를 받은 후에 다시 이송운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처음에 이송운과 약속하기를 감정료와 국과수 교체 청탁비 등을 합쳐서 650만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제가 200만원을 지급하여 3사람의 감정서를 받고 난 뒤에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아 이송운이 수십 차례 저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나머지 돈을 달라고 독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8. 24. 10:00경 이송운이 저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이세용의 필적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하게 되는데 빨리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저는 처음에 이송운에게 약속한 급행료 등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200만원을 이송운의 구좌에 송금하여 주었고 같은 해 9. 22.경에도 이송운이 국과수에 감정관계로 손을 써야 된다고 하며 제게 전화를 하였기에 제가 한치준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받으라고 하였더니 이송운이 한치준에게 연락하여 250만원을 송금받은 것입니다.

문 : 그렇다면 명목상으로는 이송운과 1인당 감정료와 청탁교체비 등을 합쳐서 200만원으로 정했지만 실제로는 3사람의 감정료로는 피의자가 88. 6. 초순경 20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에 지급된 450만원은 감

정료와는 전혀 관계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청탁교체비로 지급한 것이지요.

답 : 예, 8. 24. 송금한 200만원과 9. 22. 송금한 250만원은 감정료와는 관계없고 이송운이 국과수에 손을 써서 감정을 빨리 받아내는 급행료로 지급한 것입니다.

문 :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세용의 필적을 감정한 감정서를 보면 1988. 8. 26. 서울형사지법에서 국과수에 필적감정의뢰를 하였고, 같은 해 9. 23. 국과수에서 서울형사지법에 필적감정회보를 하였는데 피의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답 :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송운이 저희들에게 급행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먼저 알고 제게 국과수에 급행료를 주어야 된다고 교묘히 이용한 것입니다.

문 : 피의자가 이송운에게 감정의뢰를 한 사실과 감정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청탁교체비 등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세용도 알고 있었나요.

답 : 제가 이송운에게 감정을 의뢰한 2-3일 후 서울구치소로 이세용을 면회가서 특별면회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세용에게 "사설감정업자에게 감정의뢰를 하였다"고 하면서 "감정서가 나오면 변호사가 보석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알려주었더니 이세용이 "돈이 얼마가 들건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대답하였기 때문에 이세용이 이송운이라는 사람은 몰라도 사설감정업자에게 감정의뢰했다는 사실과 국과수에 급행료를 준다는 사실 등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전회 진술시에는 감정료, 급행료 등으로 총 850만원을 이송운에게 주었다고 하였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가요.

답 : 지난 번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잘못 진술하였던 것이며 650만원을 지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 : 유리한 증거나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 한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 후 서명 무인케 하다.

진술자 양 종석

1992. 3. 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우경

검찰주사(보) 주남수

■자료 마-1-38 (공판기록 3136~3152) 증제27의 36

### 피의자 신문조서

(제 3 회)

성명 김형영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에 대한 뇌물수수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2. 3. 2.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김우경은 검찰주사보 주남수를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린 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 전회 진술은 모두 사실대로 진술한 것인가요.

답 : 예,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가 89. 5. 하순경 이인환으로부터 200만원을 받게 된 경위를 자세히 말해보시오.

답 : 89. 5.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서대문구 홍운동 소재 유진상가 2층 상호미상 생맥주집에서 이인환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이인환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사건관계로 국과수에 감정의뢰를 하게되어 있는데 감정의뢰가 오면 잘 부탁한다고만 하였고 며칠후에 이인환과 이세용을 다시 만나 그 자세한 내막을 듣게 되었습니다.

문 : 이인환이 피의자에게 준 위 2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답 : 제가 이인환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며칠 후에 이인환으로부터 저녁 7시에 프라자호텔 로비에서 만나자는 전화연락을 받고 프라자호텔 로비로 갔더니 이인환이 이세용을 제게 소개시켜 주었는데 지난번 감정관계를 부탁했던 사람이다라고 하여 제게 200만원을 준 사람이 이세용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프라자호텔 로비에서 이인환, 이세용을 만나 호

텔 뒤편에 있는 일식점 송원으로 가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세용으로부터 자세한 내막을 듣게 되었는데 이세용이 사건관계로 감정을 하였는데 어느 것이 옳게 감정이 되었는지 검토해달라고 하며 이익주와 이인환의 감정서를 제게 보여주기에 제가 두 사람의 감정서를 검토해보니 이익주의 감정이 잘못되어 있어 제가 이익주의의 감정이 잘못되었고 이인환의 감정이 옳다고 하였더니 이세용이 조병길을 사문서 위조건으로 고소하였는데 이 사건에 대한 감정의뢰가 오면 지금 검토한 바와 같이 사실대로 정확히 감정해달라고 하는 청탁이었습니다.

문 : 그렇다면 당시 이익주의 감정서는 이세용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고, 이인환의 감정서는 이세용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세용이 조병길을 고소한 사건으로 감정의뢰를 받게 되면 이인환의 감정서와 같이 이세용에게 유리하도록 감정을 잘해달라는 것이군요.

답 : 예, 사실대로 감정을 하면 이인환의 감정서와 같이 이세용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세용에게 유리하도록 사실대로 감정을 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문 : 이것이 당시 이세용이 피의자에게 보여준 이익주의 감정서인가요.  
이때 검사는 기록 제 정의 필적감정서를 피의자에게 보여준 바.

답 : 예, 당시 이세용이 제게 보여준 이익주의 감정서가 맞습니다.

문 : 같은 해 8. 19. 이세용으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답 : 1989. 8. 14.경 이세용이 저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19:00경 프라자호텔 로비에서 만나자고 하기에 약속시간에 프라자호텔 로비로 나갔더니 이세용이 혼자 와 있어 같이 프라자호텔 중식당으로 올라가 식사를 하면서 이세용이 이송운의 감정서를 제게 보여주며 검토해달라고 하여 살펴보니 지난번의 이익주, 이인환이 감정한 것과 같은 조병길의 필적에 대한 감정서였는데 이송운의 감정서도 잘못 감정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영터리 감정이 어디 있느냐, 만약 이건으로 감정의뢰를 해오면 내가 사실대로 정확히 감정을 해주겠다고 하였더니 이세용이 고맙다

고 하면서 현재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송금을 해주겠다고 하여 제가 저 신귀분의 국민은행 계좌번호(036-21-0251-741)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8. 19. 이세용이 저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200만원을 저의 계좌로 입금시켰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문 : 이송운의 감정서가 잘못되어 있고 피의자가 사실대로 정확히 감정을 해주겠다고 한 것은 결국은 이송운의 감정서는 이세용에게 불리하도록 되어 있는 데 피의자가 사실대로 감정을 해주면 이세용에게 유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이세용이 피의자의 위와같은 말을 듣고 200만 원을 입금시켜 준 것은 이전으로 피의자에게 감정의뢰를 할 경우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감정을 해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감정의뢰를 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감정을 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이군요.

답 : 예, 결국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대로 감정을 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돈을 준 것입니다.

문 : 이것이 당시 이세용이 피의자에게 보여준 이송운의 감정서인가요.

이때 검사는 기록 정의 감정서를 피의자에게 보여 준 바,

답 : 예, 이세용이 조병길을 고소한 사건으로 조병길의 필적감정을 한 감정서가 맞습니다.

문 : 피의자는 이세용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감정결과를 회보한 것은 위와같이 이세용으로부터 감정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달라고 청탁을 하며 뇌물을 주었기 때문에 피의자는 위와같이 뇌물을 받고 이세용에게 유리하도록 감정을 해준 것이 아닌가요.

답 :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의주나 이송운의 감정서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대로 감정을 해주었을 뿐이며 제가 사실대로 감정을 해주자 이세용에게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문 : 90. 9. 초순 이인환으로부터 70만원을 받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 90. 9.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유진상가 2층 소재 상호불상 생맥주집에서 이인환으로부터 "양승호건으로 법원에서 사실조회의뢰가 오면 양승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신을 해달라"고 하는 청탁과 함께 70만원을 받았습니다.

문 : 양승호사건의 내용은 어떤 것이며 양승호사건으로 사실조회가 있었나요.

답 : 양승호사건이란 고소인 강태호가 피의자 양승

아래층 양과점에서 케익을 사들고 올라오는 이세용을 만나 호텔 중식당으로 가서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대전지방법원에서 의뢰한 조병길에 대한 필적감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하며 200만원을 주기에 받은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언제 위 조병길에 대한 필적감정을 해주었는가요.

답 : 이세용이 조병길을 사문서변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이었는데 대전지방법원에서 1990. 8. 23. 감정의뢰를 해왔기에 제가 이에 대한 감정을 하여 간 은해 4. 12. 감정회보를 해주었습니다. 감정결과는 조병길의 필적을 모방하거나 전사하지 않은 필기구로 직접 자연스럽게 쓴 필적이라는 것으로 이세용에게 유리한 감정결과였습니다.

문 : 이것이 당시 피의자가 대전지방법원의 감정의뢰를 받고 감정한 감정서인가요.

이때 검사는 기록 정의 감정서를 피의자에게 보여 준 바,

답 : 예, 이세용이 조병길을 고소한 사건으로 조병길의 필적감정을 한 감정서가 맞습니다.

문 : 피의자가 이세용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감정결과를 회보한 것은 위와같이 이세용으로부터 감정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달라고 청탁을 하며 뇌물을 주었기 때문에 피의자는 위와같이 뇌물을 받고 이세용에게 유리하도록 감정을 해준 것이 아닌가요.

답 :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의주나 이송운의 감정서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대로 감정을 해주었을 뿐이며 제가 사실대로 감정을 해주자 이세용에게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문 : 90. 9. 초순 이인환으로부터 70만원을 받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 90. 9.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유진상가 2층 소재 상호불상 생맥주집에서 이인환으로부터 "양승호건으로 법원에서 사실조회의뢰가 오면 양승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신을 해달라"고 하는 청탁과 함께 70만원을 받았습니다.

문 : 양승호사건의 내용은 어떤 것이며 양승호사건으로 사실조회가 있었나요.

답 : 양승호사건이란 고소인 강태호가 피의자 양승

호에게 약속어음 1매에 대한 보관증을 써주었는데 양승호가 이 보관증을 가필하여 위조하였다는 것으로 강태호가 양승호를 사문서변조로 고소하자 검찰에서 수사를 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위 보관증의 변조여부를 감정의뢰하여 왔기에 1989. 11. 3. 변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양승호가 이전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1990. 9. 초순경 제가 감정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조회의뢰가 왔었습니다.

문 : 피의자가 위 보관증에 대한 감정서에서 변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을 하였다면 양승호가 변조를 한 것으로 되어 양승호에게 불리한 감정을 하였는데 양승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조회회보를 해달라는 것은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가요.

답 : 양승호가 이인환을 통해 70만원을 주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조회 회보를 해달라고 한 것은 지난번의 감정서의 같이 변조된 것으로 통보를 하지 말고 변조여부를 식별할 수 없다는 등으로 내용을 부드럽게 하여 회보를 해달라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하면 양승호에게는 다소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문 : 양승호건으로 이인환을 통해 70만원을 받고나서 양승호가 요구하는대로 양승호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나요.

답 : 제가 1990. 9. 11. 서울형사지법에 사실조회 회신을 보냈는데 감정서와 똑같이 변조됐다는 취지로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습니다.

문 : 양승호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조회 회신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0만원을 받았으면서도 사실조회 회신을 하면서 변조됐다는 취지로 회신을 하여 양승호에게 불리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제가 위 보관증을 감정한 결과 변조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양승호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지만 제 소신껏 사실대로 통보를 한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이후에도 양승호건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1990. 12. 4. 위 유진상가 2층 생맥주집에서 이인환으로부터 140만원을 받았고, 같은 달 6.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이인환으로부터 140만원을 받

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 위와같이 2차례 도합 280만원을 어떤 명목으로 받은 것인가요.

답 : 제가 위 양승호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1990. 11. 22. 서울형사지법에 나가 증언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때도 저는 소신대로 위 보관증은 변조된 것이라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양승호의 변호사인 이인제 변호사가 저의 감정능력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며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문서를 재감정하여 사실대로 밝혀내는지 실험을 해보자고 하여 제가 사실대로 밝혀낼 수 있다고 하였더니 위와같이 재감정 실험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양승호가 이인환을 통해 다시 청탁해오기를 위와같이 재감정을 하게 되었는데 재감정시에는 양승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감정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입니다.

문 : 재감정 실험을 할 때 양승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감정을 해주는 것은 어떻게 해주는 것인가요.

답 : 제가 재감정 실험에서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문서를 정확히 밝혀내면 저의 감정능력이 인정을 받고 따라서 제가 감정한 위 보관증에 대한 변조되었다는 감정결과도 신뢰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이 감정결과에 따라 양승호가 처벌을 받게 되며, 제가 재감정 실험에서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문서를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면 저의 감정능력이 의심을 받게 되고 위 보관증에 대한 변조됐다는 저의 감정결과도 신뢰성이 없어 양승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므로 재감정 실험에서 정확히 밝혀내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문 : 위와같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나서 양승호에게 유리하도록 재감정을 해주었나요.

답 : 제가 90. 11. 22. 증언을 할 때에 법정에서 재감정을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재감정 의뢰가 없어 재감정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양승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조회 회신이나 재감정 등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위와같이 금품을 받았는데 금품을 준 양승호의 요구대로 사실조회 회신이나 재감정 등을 해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위 금품을 양승호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 : 사실조회 회신과 관련하여 이인환이 70만원을 가져왔을 때 제가 사실대로 회신을 하겠다고 하였는데도 이인환이 양승호에게 유리하도록 회신해달라며 70만원을 주고 갔기 때문에 제가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재감정 실험과 관련하여 받은 200만원에 대하여는 재감정의뢰가 오면 사실대로 재감정을 하고 나서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재감정의뢰가 오지 않아서 돌려주지 못했던 것으로 재감정을 하게 되면 돌려줄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 : 피의자가 재감정에서도 양승호의 요구대로 재감정을 해줄 생각이 없었다면 재감정 의뢰가 오기 전이라도 위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 :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문 : 양승호~~건~~으로 이인환을 통해 받은 280만원을 어떻게 하였나요?

답 : 저의 생활비, 용돈으로 모두 써버렸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 돈을 돌려줄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모두 써버렸다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데 어떤가요?

답 : 이인환이 준 280만원은 제가 우선 사용하였고 재감정의뢰가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280만원을 다른 데서 충당하여 갚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 양승호 사건의 고소인인 강태호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1989. 12. 9. 15:00경 강태호가 저의 사무실로 찾아와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2매 20만원을 주기에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어떻게 하여 강태호로부터 돈을 받게 되었나요?

답 : 강태호가 양승호를 고소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면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문제의 보관증 번조여부에 대한 감정의뢰를 하여 왔기에 제가 1989. 11. 3. 번조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작성하여 회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저의 감정결과가 고소인 강태호에게 유리하게 되었으며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강태호가 저의 사무실로 찾아와 감정결과가 유리하게 되어 고맙다고 하며 20만원을 주기에 받은 것입니다.

문 : 위 보관증을 감정하기 이전에 피의자는 강태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감정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강태호의 청탁대로 감정을 해주고 나서 돈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요?

답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 : 강태호에게 받은 20만원은 어떻게 하였나요?

답 : 같은 날 서울신탁은행 신월출장소에서 제 명의의 서울신탁은행 자유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

에 입금시켰습니다.

문 : 이것이 강태호에게서 받은 20만원을 입금한 피의자의 통장인가요?

이때 검사는 당청 92압제 호 자유저축예금통장을 피의자에게 보여준 바.

답 : 예, 이 통장이 맞습니다. 89. 12. 9. 997,000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여기에 강태호에게서 받은 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 : 강태호에게서 20만원을 받은 날자가 89. 12. 9. 이 확실한가요?

답 :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돈을 받은 날 입금한 것으로 기억되어 89. 12. 9.이라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문 : 90. 7. 하순경 이귀덕사건으로 이인환으로부터 3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90. 7. 하순일자불상 20:00경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유진상가 2층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이인환이 찾아와 이귀덕이라는 여자가 남편 사망 후 재산관계로 다툼이 있는데 남편의 유서가 위조되었으며 고소를 제기하여 국과수에 감정의뢰를 하였는데 이귀덕에게 유리하도록 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만원을 주기에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위 이귀덕 사건과 관련하여 신찬석으로부터도 돈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신찬석이 이귀덕사건의 감정판례로 제가 전주에 출장가는 것을 알고 저의 사무실로 90. 7. 하순 일자불상경 전화를 하여 이귀덕사건으로 전주에 출장을 간다는데 출장비를 보내주겠다고 하며 저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앞서 진술한 바의 같이 서울신탁은행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더니 같은 해 3. 1. 신찬석이 35만원을 입금시켜 주어 받게 된 것입니다.

문 : 신찬석이 피의자에게 위와같은 출장비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위 이귀덕사건이란 이귀덕의 남편 조종섭이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이 유서에는 자기재산을 차남에게 물려준다고 되어 있자 유서에 의해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하게 된 이귀덕이 남편의 유서가 위조된 것이라며 시동생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자 1990. 7. 23. 전북도경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위 유서의 필적감정의뢰를 하였는데 조종섭이 생전에 작성한 자술서 등이 전주지방법원에 있어 위 자술서를 전주지방법원에 가서 활용해오기 위해 출장을 가게 된 것으로 명목은 출장비로 준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귀덕이 고소한 사건의 감정을 하면서 이귀덕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감정을 잘해달라는 명목으로 준 것입니다.

문 : 이것이 피의자가 신찬석으로부터 35만원을 입금받은 예금통장인가요?

이때 검사는 당청 92압제 호 자유저축예금통장을 피의자에게 보여준 바.

답 : 예, 신찬석이 이귀덕사건의 감정을 잘해달라며 출장비 명목으로 입금시켜 준 통장이 맞습니다.

문 : 이인환, 신찬석으로부터 위와같이 금품을 받고 이귀덕사건에 대한 감정을 잘해주었나요?

답 : 제가 1990. 8. 10. 조종섭의 유서필적에 대한 감정서를 작성하여 전북도경에 통보하였는데 유서의 필적이 일관성이 없고 변화점이 많기 때문에 위조한 것인지 조종섭이 유서를 작성할 때 건강이 나빠 일관성이 없게 작성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어 식별불능으로 감정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문 : 이것이 피의자가 이귀덕 사건의 조종섭 필적을 감정한 감정서인가요?

이때 검사는 기록 제 정의 감정서를 피의자에게 보여준 바.

답 : 예, 제가 조종섭의 필적을 감정한 감정서가 맞습니다.

문 : 피의자는 이인환, 신찬석으로부터 이귀덕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는데 식별불능으로 감정결과를 통보하였다면 이귀덕에게 유리한 감정이 아닌데 어떤가요?

답 : 이귀덕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감정해 주려면 위 유서가 위조되었다고 감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위 유서와 조종섭이 생전에 쓴 자술서 등을 비교하여 감정해본 결과 식별불능이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감정결과를 통보한 것입니다.

문 : 이인환이나 신찬석이 요구하는대로 감정을 해주지 않았다면 금품을 돌려주어야 되지 않는가요?

답 : 이인환을 통해 받은 30만원은 이인환이 돌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 돌려주지 못하였고 신찬석으로부터 받은 35만원은 제가 신찬석에게 빌려준 돈이 50만원이 있는데 이중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돌려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 : 피의자가 지금까지 진술한 바와 같이 이인환, 이세용, 강태호, 신찬석, 양승호, 이귀덕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모두 피의자의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지요?

답 : 예, 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으로 필적감정, 인영감정 등 문서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문서감정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문서감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면 위 사람들이 제게 위와같이 금품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위와같이 받은 금품을 모두 어떻게 하였나요?

답 : 그때 그때 모두 생활비 등으로 써버렸습니다.

문 : 유리한 중거나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진술자 김 형 영

1992. 3. 2

서 울 지 방 검 찰 청

검 사 김 우 경

검찰조사(보) 주 남 수

국자료 마-1-39 (공판기록 3153~3163) 증제27의 37

## 피의자 신문조서

(제 2 회)

성명 이세용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에 대한 뇌물을 공여 등 위의 사건에 관하여 1992. 3. 3.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김우경은 검찰 주사보 주남수를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당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린 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전회 진술은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나요.

답: 예,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진술시에는 제가 김형영실장에게 돈을 주게 된 과정에 대해서 변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문: 88. 6. 피의자가 특정법위반(공갈)으로 구속되어 있을 때 양종석이 피의자를 면회와서 필적감정을 이송운이라는 사설감정업자에게 의뢰하였으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감정을 부탁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 구소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이송운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답: 예, 1988. 6. 초순경 제가 기소된 후 위와같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피의자의 필적감정을 받기 위해 누구에게 얼마의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하던가요.

답: 당시 양종석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보석신청을 하기 위해 필적감정의뢰를 하였으며 필적감정이 나오는 대로 보석신청을 하겠다"라고 하기에 제가 필적감정 등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문: 피의자에 대한 보석신청을 하기 위해 필적감정을 의뢰한다면 필적감정결과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나와야 할 것이 아닌가요.

답: 당시 필적감정의뢰한 자기앞수표 배서 필적은 저의 필적이 아니기 때문에 필적감정을 하면 당연히 제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필적감정

을 빨리해서 보석신청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문: 필적감정을 하려면 감정료가 필요하고 또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국과수 직원들에게 청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런 비용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하였나요.

답: 당시 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종석, 한치준 등이 면회를 와 접견을 하는 자리에는 교도관이 옆에서 기재하기 때문에 국과수 직원에게 금품을 주어 청탁을 한다는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수는 없었고 비용문제에 대하여는 제가 한치준, 양종석에게 모두 일임하여 "돈이 얼마나 들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면회온 양종석에게 돈이 얼마나 들건 너희들이 모두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필적감정을 받아 보석신청을 하여 피의자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지요.

답: 양종석과 한치준이 면회를 와서 감정서가 잘 나와서 보석이 된다고 하여 저는 필적감정에 대한 모든 것을 양종석에게 일임하였으며 밖에서 하는 모든 일은 저의 위임에 따라 양종석과 한치준이 처리한 것입니다.

문: 양종석은 피의자의 위와같은 위임에 따라 피의자사건의 필적감정이 국과수에 의뢰될 것을 알고 이송운을 통해 국과수의 피의자 필적감정 담당직원에게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감정을 잘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교제비 명목으로 1988. 8. 24. 200만원, 같은 해 9. 22. 250만원을 이송운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저는 양종석과 한치준에게 모두 위임하였기 때문에 위와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 피의자는 89. 5.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진다방에서 이인환에게 200만원을 전ne준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분석실장인 김형영에게 전해달라고 이인환에게 200만원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문: 위 200만원을 왜 김형영에게 전해달라고 한

것인가요.

답: 제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회사에 나가보니 조병길이 인증촉탁서가 위조되었다며 이에 대한 필적감정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저의 회사를 뱗으려고 하여 이인환을 만나 위인증촉탁서의 조병길 필적을 감정의뢰하였습니다. 이인환 등이 감정한 결과 조병길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것으로 저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와 사설감정업자 이익주와 이송운은 조병길의 감정의뢰를 받고 위 인증촉탁서를 감정하면서 조병길에게 유리하도록 모방체니 전사체니 하는 등으로 서로 다르다는 감정을 해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인환에게 부탁하여 이익주의 감정을 받을 경우 조병길이 의뢰했을 때와는 달라 저에게 유리한 감정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인환이 자기 감정결과와 같은 감정이 나오도록 이익주의 감정을 받아줄 수 있다고 하여 이인환에게 이익주의 감정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후 89. 5. 하순경 이인환의 연락을 받고 위 진다방으로 나가보았더니 이익주의 감정서는 조병길이 의뢰했을 경우와 똑같은 감정결과가 나와 있어 제가 항의를 하였더니 이인환이 제게 설명해 주기를 이익주에게 부탁을 하였는데 전에 조병길에게 감정을 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감정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렇다면 누구의 감정이 옳은 것인가고 따졌더니 이인환이 우리나라에서 문서감정의 제일인자가 국과수의 김형영 문서분석실장인데 김형영을 자기가 잘 알고 있으니 한번 만나게 해주겠다. 위 김형영에게 누구 감정이 옳은지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형영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며 김형영이 감정의 최종결론을 내리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조병길과의 민사소송, 조병길을 고소한 사건 등으로 필적감정을 해야 되는데 잘 좀 부탁을 해달라는 뜻으로 준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위 200만원은 국과수에서 문서감정업무를 담당하는 김형영에게 문서감정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이인환에게 준 것이지요.

답: 저는 이인환에게 김형영을 만나게 해달라며 200만원을 주었는데 이인환이 저의 감정관계를 부탁하며 김형영에게 돈을 전달하여 결과적으로는 제가

김형영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이인환에게 200만원을 교부해준 것이 됐습니다.

문: 이인환이 김형영을 만나게 해주던가요?

답: 예, 89. 6. 초순 일자불상경 이인환이 저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프라자호텔 로비에서 19:00에 만나고 하여 약속장소로 나갔더니 김형영이 약속장소로 나와 서로 인사를 하고 근처의 일식점으로 가서 식사대접을 하였습니다.

문: 당시 김형영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하였나요.

답: 제가 이익주와 이인환의 감정서를 김형영에게 보여주며 어느 것이 옳은 감정인지 봐달라고 하였더니 김형영이 두 사람의 감정서를 30여분간 검토하더니 이익주의 감정서가 엉터리라고 판정을 해주었습니다.

문: 그 후에 피의자는 다시 김형영을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89. 8. 14. 19:00경 프라자호텔 로비에서 김형영을 만나 프라자호텔 내의 중식당으로 올라가 식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이때는 김형영과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가요.

답: 제가 조병길과의 민사사건에서 조병길이 증거로 제출한 이송운의 감정서를 입수하여 김형영에게 보여주며 검토해달라고 하였더니 김형영이 한참을 검토하더니 이것도 전부 엉터리 감정이라고 하며 나중에 내가 전부 바로 잡아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문: 이때 김형영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김형영이 자기가 교회장로인데 교회의 건축재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며, 제게 여유가 있다면 건축현금을 해달라고 하기에 제가 건축현금을 할 정도로 여유는 없다고 하고서는 제가 실장님 용돈이나 보내드릴 테니 온라인 구좌번호나 알려달라고 하였더니 김형영이 신귀분의 국민은행 계좌번호(036-21-0251-741)를 알려주기에 제가 대전으로 내려온 뒤 같은 달 19. 대전에서 위 구좌로 200만원을 입금시켜 주었습니다.

문: 위 200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준 것인가요.

답: 김형영이 국과수의 문서분석실장으로서 조병길과의 민사소송에 제출된 이익주, 이송운 등의 감정서를 검토해보고 제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잘

해주어 고맙기도 하였고 앞으로 김형영에게 잘 보이면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되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김형영이 요구하는 건축현금을 하려면 건축현금은 몇 천만원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서 김형영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고 김형영의 요구를 아주 딱 잘라 거절해 놓으면 앞으로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용돈이라도 하라며 200만원을 보내준 것입니다.

문 : 만약 김형영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문서 감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피의자는 위와 같이 돈을 줄 수 있는가요?

답 : 김형영이 국과수에서 문서감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위와같이 돈을 보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 : 이것이 당시 피의자가 김형영에게 200만원을 송금한 입금표인가요?

이때 검사는 기록 제 정의 입금표를 피의자에게 보여준 바.

답 : 예, 맞습니다.  
문 : 피의자는 그 후에도 또 김형영에게 금품을 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1990. 4. 하순 일자불상 19:00경 프라자호텔 로비에서 김형영을 만나 중식당으로 올라가 식사를 하면서 현금, 수표 등으로 200만원을 김형영에게 주었습니다.

문 : 위 200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주었는가요?  
답 : 제가 조병길을 위증,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재판계류중이었는데 대전지법에서 국과수에 조병길의 필적에 대한 감정의뢰를 하여 같은 달 12. 국과수에서 김형영실장이 감정회보를 하였는데 저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고맙다는 뜻으로 준 것입니다.

문 : 이것이 당시 김형영이 감정한 감정서인가요.  
이때 검사는 기록 제 정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90. 4. 12. 자 감정서를 피의자에게 보여준 바.

답 : 예, 맞습니다.  
문 : 피의자는 대전지법에서 국과수에 조병길의 필적감정의뢰를 하였을 때 김형영에게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아닌가요.  
답 : 제가 앞에 진술한 바와 같이 김형영을 두번이

나 개인적으로 만나 이익주, 이송운의 감정서를 보여주며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김형영이 제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감정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문 : 피의자는 앞서 두 차례 김형영을 만나 각 200만원씩 4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조병길의 필적을 의뢰할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김형영에게 청탁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요?

답 : 제가 처음부터 조병길의 필적감정에 대비하여 김형영을 만나 청탁을 하였던 것은 아니고 김형영이 국과수의 문서분석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있을 소송사건 등에 대비하여 김형영을 잘 사귀어 두어야 되겠다고 하며 교제를 해놓았던 것인데 대전지법에서 제가 고소한 사건으로 국과수에 필적감정의뢰를 하여 제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보니 제가 사건에 국과수에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문 : 김형영이 조병길의 필적감정을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감정을 해주어 200만원을 주었다면 이것은 김형영의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뇌물이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유리한 중거나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사설감정업자들이 조병길에게 엉터리 감정을 해주어 제가 회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어서 저도 미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인환, 김형영 등을 뜯어다니면서 문서감정을 받다보니 이렇게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진술자 이 세 용

1992. 3. 3.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우경

검찰주사(보) 주남수

### 피의자 신문조서

(제 4 회)

성명 이인환 주민등록번호

위의 사람에 대한 뇌물공여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2. 3. 3.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김우경은 검찰주사보 주남수를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린 즉 신문에 따라 진술하겠다고 대답하다.

문 : 전회까지의 진술은 모두 사실대로 진술한 것인가요?

답 : 예,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문 : 89. 5.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진다방에서 이세용으로부터 김형영에게 전해달라는 200만원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전해달라는 것이었나요?

답 : 당시 이세용이 이익주의 감정을 받아달라고 하여 이익주에게 조병길의 필적감정을 받았는데 저의 감정결과와는 반대의 감정이 나오자 이세용이 화를 내면서 믿을 수 없다고 하기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는 문서감정가인 국과수 김형영 문서분석실장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더니 이세용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제게 200만원을 주며 김형영에게 잘 부탁을 해달라고 하여 받았던 것으로 이세용이 소송사건과 관련되어 국과수에 감정의뢰를 하게 될 경우 이세용에게 유리하도록 잘 해달라는 뜻으로 준 것으로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문 : 그렇다면 이것은 국과수에서 문서감정업무를 담당하는 김형영에게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제공하는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 교부받은 것이지요.

답 : 예, 이세용이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김형영에게 주는 뇌물로 알고 2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그후 저는 위 200만원을 그대로 이세용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양승호건으로 3회에 걸쳐 350만원을 신찬석으로부터 받아 김형영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지

요.

답 : 예, 지난 번에 진술한 바와 같이 90. 9. 초순 70만원, 같은 해 12. 4. 140만원, 같은 달 6. 140만원 등 도합 350만원을 신찬석으로부터 받아 김형영에게 전달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문 : 당시 양승호가 어떤 명목으로 신찬석에게 돈을 주었으며 신찬석은 왜 이 돈을 김형영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던가요?

답 : 저는 신찬석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또 양승호를 신찬석과 같이 만나 사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양승호가 돈을 준 내막을 알고 있는데 당시 양승호가 문서를 변조했다고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데, 90. 9. 초순 70만원을 전해달라고 한 것은 국과수에 범원에서 사실조회를 의뢰하였는데 김형영에게 부탁하여 조회결과가 잘 나오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양승호가 신찬석에게 100만원을 주었고 신찬석이 그돈에서 제게 70만원을 주며 김형영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저는 위와 같은 취지를 김형영에게 말해 주며 70만원을 전달하였고, 그후 두 차례에 걸쳐 140만원씩 280만원을 전달한 것은 양승호가 김형영에게 시험감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며 김형영에게 부탁하여 시험감정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감정을 잘 해달라고 부탁을 해달라고 하며 200만원 씩 2회에 걸쳐 400만원을 신찬석에게 입금시켜 주었으며, 신찬석이 140만원 씩 2회에 걸쳐 280만원을 제게 주며 김형영에게 전해달라고 하여 저는 위와같은 뜻을 김형영에게 부탁하며 280만원을 전달해준 것입니다.

문 : 당시 양승호가 신찬석에게 준 돈은 김형영에게 청탁교체비로 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감정을 하기 위한 시필비용 등으로 준 것이 아닌가요?

답 : 당시 양승호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시험감정을 하게 되었다며 필경사를 구해야 된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승호가 신찬석에게 준 돈은 시필비용이 아니라 김형영에게 청탁을 해달라며 준 것입니다. 만약 양승호가 위 돈을 김형영에게 전달해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문 : 신찬석은 양승호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피의자에게 주었는데 피의자가 감정업계의 소개비 관계대

로 30%를 공제하여 자신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를 김 혜영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문 : 아닙니다. 그것은 신찬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것입니다. 신찬석이 3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제게 주었기 때문에 저는 신찬석에게 받은 금액 전부를 그대로 김형영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문 : 유리한 증거나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89. 5 하순 이세용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김형영에게 전달한 것에 대하여 당시에는 이세용이 감정관계로 김형영에게 청탁을 해달라며 주는 것으로 알고 저는 200만원을 그대로 김형영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번에 조사를 받으면서 이세용의 진술을 들어보니 제가 김형영을 소개해 준다고 하니까 고마워서 소개비를 준 것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제가 이세용의 뜻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의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작술자 이 일 훈

1992.3.3

서울지방검찰청

## 검사 김우경

검찰주사(보) 주 남 수

# “國科搜직원 돈받고 거짓감정”

# 民間감정인 폭로 私設감정원과 결탁

재판용 허위文書「진짜」판정  
사례비 件當 5百萬원 줬다



(3) 20版 第21897

(滿3種動便物(7)級認可)

社 説

國科搜마저

한국·한글·한민족 | 김광현/한글학회장·상한로 명예지 | 한글재민족문화 ⑤ 121-020 서울특별시 마포구 강원로116-25 | The Han-Korean Shinmu | 02) 7

2021 2. 11.

# “국과수직원 돈받고 허위감정”

장, 저문 등 문서감  
시내 최고의 전시회  
를 개최하고 있는 국립  
국립(국수과) 직원이 사  
통에 소송사건이나  
기획으로부터 무리  
를 벗어나지 않고  
받고 거짓 감정을 해  
여 살해해 있게 제기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은 9일 일상·사생각  
리사설을 폭로함에  
다.  
정월은 10월 이 사  
주3부에 배당해

신비를 이런 형식으로 자신이 보거나 듣거나 한 경험과는 모두 피의원으로서 유리하게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나니 몇도였다.  
신비로운 비슷한 일구나 서정감 있는 인물들은 무언을 막고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각광받았던 것 같다. 언뜻보면 그들이 좋았던 것이다.  
김진씨는 지난날 본인 자신의 일기에서 자신의 본인 위엄이 아니라 강경(2)·구제(3)·미의 글이라는 강경한 유치원질에 깊이 감명을 떠올렸다.  
김진씨는 저년에는 본인 위엄이 아니라 강경(2)·구제(3)·미의 글이라는 강경한 유치원질에 깊이 감명을 떠올렸다.  
김진씨는 저년에는 본인 위엄이 아니라 강경(2)·구제(3)·미의 글이라는 강경한 유치원질에 깊이 감명을 떠올렸다.  
김진씨는 저년에는 본인 위엄이 아니라 강경(2)·구제(3)·미의 글이라는 강경한 유치원질에 깊이 감명을 떠올렸다.  
김진씨는 저년에는 본인 위엄이 아니라 강경(2)·구제(3)·미의 글이라는 강경한 유치원질에 깊이 감명을 떠올렸다.

은 갈기흔에 사건을 바꾼 한인  
정사사건뿐만 아니라 철학자 이  
장, 저문 등의 감정질과 및 재판  
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민사재판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 큰

## 국과수 필적 감정 피해 주장 잇따라

하고 강정장을 갖는다. 당시  
나라 밖에서는 다시 놀고 놀며 점점  
서 허름하고 벌써 무진한 힘을  
들었지만, 이에 대한 강정  
장을 갖는다. 다시 국가에 의해  
부인어인 진위한 힘의 것이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는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서 갖는다. 이  
는 자신의 힘과 비교하고 시민하며  
자신의 힘을 갖는다. 그리고 그  
들은 진정한 진정한 힘을 갖는다.  
부인어는 사실 진정한 힘의 일상화를  
전파해주는 힘을 상상구에 차운  
서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은 개인에게 대한 소환계열은 이  
를 배운 다음에 알았다.



2/11 토요

2-11 동아일보

國科搜、밀어도 되나  
동아 11

2.1  
50

# 國科搜 공신력에 致命打

재판계류사간 대호란초래 우란

판기류서전  
대필·제작·판권

The newspaper clipping is in Korean. The main headline reads "국립搜공 신력에 致命打" (Fatal shot from the National Police's power). Below it is a sub-headline "재판계류사건 대혼란초래 우려" (Concern over the trial delay case causing a major disturbance). The article discusses a shooting incident at a bank in Seoul, mentioning the National Police and the Ministry of Justice. There are several columns of text providing details about the event and its broader implications.

# 심판대 오른 최고감정기관 공신력

한국의 철학자들은 그들의 철학을 통해 세계관을 확장하고, 개인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노력합니다. 특히 윤리학 분야에서, 선의 가치와 공정의 원칙을 강조하는 학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윤리학자 김우중은 '선의 원칙'을 통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제시합니다. 그 외에도 윤리학자 김기현은 '공정의 원칙'을 통해 개인 간의 상호 존중과 평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학파들은 개인의 윤리적 책임감을 고취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 대한 신뢰가 확고히 향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세계화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화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화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예술을 살피는 시각으로, 그 속에서 드러나는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를 탐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특히, 고대·중세·근대·현대 각 시기의 문화 유산과 예술 작품을 통해 그 시대의 사회·정치·경제·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구속되자 인감 날조 주장

তুলনা করি দেখিব।

국회搜 허위감정·발단 李昌烈씨사건

卷之三

ପ୍ରକାଶକ

제국의 대장군이 되었다.

한서례신문

1992년 2월 12일(수요일) [11] (월간)

[2] 1992년 2월 12일(수요일)

(4판)

사설

## ‘국과수’ 수사 떠뭇거리지 말라

권학과 인장·지문 등 문서감정 분야에서 국내외의 권위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데 국립한국사학연구소(국과수) 원회원이자 사설감정인으로 소송 당사자나 문서분석전문으로부터 서적의 수증을 받고 거짓 감정을 해다온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기독교학회는 이 사건에 대해 「수증

서울 조강정원 전 원장인 신이구재씨는 소중한 재화들의 무탁에 따라 소개표를 받고 서너마디로 허락해 걸쳐 문서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있고, 호남경찰청 이어무개씨도 국립수사 직원에게 금품을 주고 가짜 현금券을 받아온 바 무동산 배재중증사를 본문으로 조강정에 주도록 칭합했다고 밝혔다. 사체금은 건강 5백만원 정도이며, 그중 20%를 소비비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신아무개씨나 이어무개씨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이 소개해준 사건 많을 것이다.

전국 강기훈씨는 1심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정실장 김씨가 '한글 편집 경력의 최고 권위자라는 것을 근거로 조강정과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가 '최고 권위자로 인정한 강정인이 허위를 막고 허위감정을 해온 사람'으로 드러난다면 1심 판결은 근본부터 훈련되게 될 것이다. 항소심에 국민들의 관심과 논질이 쏟려는 대목이 아닌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물체감정에 대한 공신력은 비단 강기훈씨 사건에 영향을 끼치는 것 이 아니다. 국과수 직원들의 금품수수와 허위감정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유일한 직접증거로 채택돼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폐소한 형사·민사 사건의 재판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국과수의 잘못된 문서감정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당황 했던 사람들이 잇따라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분신자살한 김기설씨의 유서가 본인의 필적이 아니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총무부장 강기훈(금수중)씨의 글씨라는 감정서울 재판부에서 판결을 확정하면서 김기설은 살인죄로 기소된 바로 그 사람이다. 김씨는 지난 80년 허위감정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 그리고 지난 해말 제주시장과 함께 주수대에서 인상위조단·사건을 수사할 때 김씨가 89년부터 4~5차례에 걸쳐 서예·종교·이야기·일대소재에서 시문과 인상 50여 개를 합성수지 일제기로 부제해 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김씨는 강장조사에서 "연구 목적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허위감정 의혹이 터져 전화와 경찰은 '진위 여부 파악'을 끌어안아며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수사결과 문서감정실 상 김씨의 민족사설이 그려난 경우 국가권력과 재야가 명예를 걸고 있는 강기설씨 사건뿐 아니라 그밖의 민·형사 사건에 업체난 판문을 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은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손바단으로 해를 가릴 수 없으며, 국가 공권력이 암암리로 공신력이 있는 까닭이다.

아일보

1992年2月12日 水曜日

# 私設감정인 돈준 혐의 포착 國科搜분석실장 내일소환

예금계좌집중추적

주요관련자 出國금지 요청

『정사수감위』

正一學院  
대입종합반  
(文科·理科·藝能)

30- 2/12

第21734號

【第3植物園物(ア)】

## 이혹증폭에 떠밀린 搜查

卷之三 國科授僉人

해명성·진화용 조사로 그칠지도

2/12

## 한겨례신문

# ‘성역’ 무너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법원 감정결과 첫 배척 의미

개악자가 조작되자 알았다는 사람과 학부모들은 구조의 간접성을 예상해 무기복원으로 구속된 박재석(여·71)씨에게 서용현성지재민(11)씨 부모를 살해한 것은 과거수사 간접성을 살피고 한 것이라며

© 2013 by the author. All rights reserved.

분명히 '절친 카이'를 보이는 것  
으로 보여 주원한다.  
하지만 제판부는 이 사건 감정인  
경우에 퍼포먼스 기록을 미워하는  
것은 맞았지만 사실은 자꾸 무화  
하고 충성심에 고민되었다는 점을 강  
조시 않아 범죄도 그동안 제판부  
와 감정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  
지 않았다는 수수께瘩 분위기로  
기운다.

부시현대는 의사임을 알면 잘못  
을 저질렀다는 판단이 내려온 점  
을 지적한다.

제판부는 '길버'와 수수께瘩 본인  
(정말의 '별자리인')과 케고판관 사이  
의 갈등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면서도 이 계약에서 확인 일정의 대  
체내용과 미어진 것으로 실제 상  
세가 노동은 물론 결혼문서 면이  
제거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감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밝혔

한편, 제판부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국수과자는  
경직감정을 뛰어 넘어서 한편  
한 편이라거나 가지고 있는 경직감정  
한 것으로 나타나 이 경직감정  
이 지난해 갈등사건 제판부의 증언  
으로 '국수과자는 극악과자'가  
여야 내일부(경직감정)하지 않는  
다는 국수과자를 살펴보는 지지기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제이 벤조케

## ‘유서사건’ 판결 정당성 의문 증폭 검찰도 ‘엄청난 파문’ 우려 큰 충격

### 검찰도 '엄청난 파문' 우려 큰 충격

‘신생물가침설’  
이 개설나는 대신 미미를 두고  
제로운 변신의 계기로 삼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학은 이번 사건이 앞으로 염  
증난 세운을 뛰어넘을 것이라며 각  
자수체(各子體)의 기쁨을 암송하였다.

만나는 암상이나, <이재엽 기자>

卷之三

한국서



目

2.12 中 共

(朝鮮日報 1992. 2. 12)

제8224호

## 國科搜감정 어뢰계 허니

한국과학기술원(韓國科學技術院)은 1992년 2월 12일 아침, 대체로 평화로운 날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역사적인 사건의 일정이었습니다.

의뢰物證 공동鑑定  
민장일지부아결론

한국과학기술원(韓國科學技術院)은 1992년 2월 12일 아침, 대체로 평화로운 날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역사적인 사건의 일정이었습니다.

## 金烟水 본사 신장 기자회견

한국과학기술원(韓國科學技術院)은 1992년 2월 12일 아침, 대체로 평화로운 날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역사적인 사건의 일정이었습니다.

## “근거 없는 모함 辭表쓰고 싶다.”

한국과학기술원(韓國科學技術院)은 1992년 2월 12일 아침, 대체로 평화로운 날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역사적인 사건의 일정이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韓國科學技術院)은 1992년 2월 12일 아침, 대체로 평화로운 날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역사적인 사건의 일정이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韓國科學技術院)은 1992년 2월 12일 아침, 대체로 평화로운 날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역사적인 사건의 일정이었습니다.

奉元

사회2

1992년 2월 12일

水曜日 (22)

"鑑定 결과 만으로  
有罪결정 안된다."

법원의 國科搜감정 채택거부 의미

한국과학기술원(韓國科學技術院)은 1992년 2월 12일 아침, 대체로 평화로운 날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역사적인 사건의 일정이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韓國科學技術院)은 1992년 2월 12일 아침, 대체로 평화로운 날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역사적인 사건의 일정이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韓國科學技術院)은 1992년 2월 12일 아침, 대체로 평화로운 날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역사적인 사건의 일정이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韓國科學技術院)은 1992년 2월 12일 아침, 대체로 평화로운 날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역사적인 사건의 일정이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韓國科學技術院)은 1992년 2월 12일 아침, 대체로 평화로운 날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역사적인 사건의 일정이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韓國科學技術院)은 1992년 2월 12일 아침, 대체로 평화로운 날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역사적인 사건의 일정이었습니다.

## 절대적 권위 인정 관례 깨

## 公信力 뿌리째 흔들려

## 「國科搜」감정 불신받게 된

# 國科搜「聖域」에 된서리

인감대조등 치밀성결여 公信力치명타  
유서 代筆사건등 파장 클듯

## 유서代筆사건등 파장 클듯

2/12 801

1998-2-21第3類藥物(2)

# 「國科搜불신」裁判연기파문

民刑事사건結審잇따라미뤄

선일보

西紀 1992年 2月 12日 水曜日 (陰曆 壬申 1月 9日 戊午)

## 검찰, 国科搜 전면수사

허위감정 非理여부 밝히기로

## 2 조선일보

央 日 民 사 헌 1 1992년 2월 12일 水曜日(陰 一月九日 戊午) ①

## 검찰「國科搜의혹」全面수사

# 폭로 2명 "뇌물 안줬다" 발뺌

부녀들의 표지인 雜志社 니

# 國科搜감정 증거 채택 안해



# 金실장 銀行구좌 추적조사 李昌烈씨 사건 관련여부도 캐

기 솔루션 제공업체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해  
없다

(23) 제8224호

306 2/12  
(第3種實驗物之發送)

여는 예술적 건설과

# 자살 趙과장 동생이 이혹 폭로

녹음기 들고 다니며 판계자 만나 MBC에 提報도

한국에서는 1990년대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전에는 물리적인 매장에서 제품을 살 때는 제품의 품질이나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었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러한 체험을 놓게 되어 소비자는 제품의 품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구매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은 물리적인 매장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물리적인 매장에서는 판매자는 고객에게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매자는 고객에게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예전에는 물리적인 매장에서 제품을 살 때는 제품의 품질이나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었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러한 체험을 놓게 되어 소비자는 제품의 품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구매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전에는 물리적인 매장에서 제품을 살 때는 제품의 품질이나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었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러한 체험을 놓게 되어 소비자는 제품의 품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구매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험지도난→國科搜사건 “우연의 일치냐”